許浚에 關한 새로운 事實

韓 大 熙[1]

Ⅰ. 序 言

許浚의 祖父는 武科 出身으로서 慶尙道 右水使를 지낸 許琨이며, 아버지는 平安道 龍川에서 府使를 지낸 許磏이다. 許浚은 1546년 孔岩에서 武人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庶子였기 때문에 文科에 應試할 수 없어서 醫官으로 진출하였으며, 醫官이 된 후에는 주로 內醫院에 奉職하였다. 그는 內醫院에서 醫術을 인정받아 內醫 太醫 御醫를 거치면서 점차 名聲이 높아졌고, 말년에는 韓國 醫學의 대표적 醫書라 할 수 있는 『東醫寶鑑』을 編纂하여 韓國 醫學의 優秀性을 中國과 日本에 과시하기도 하였다.

內醫院에 奉職하면서 그는 宣祖 8년(1575) 처음으로 醫官 安光翼과 함께 入診하여 宣祖를 診察한 뒤 임금을 비롯한 宮中 人士의 병을 치료하였으며, 1581년에는 高陽生의 『纂圖脈訣』을 校訂하여 『纂圖方論脈訣集成』 4권을 編述함으로써 脈法 診斷의 原理를 밝히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展開하였다.

그는 御醫로 있는 동안 醫員으로서 치료에 많은 業績이 있었으며, 王子의 痘瘡을 치료하여 宣祖로부터 堂上의 加資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壬辰倭亂 때에는 義州까지 임금을 扈從하여 扈聖功臣에 올랐다.

이러한 戰亂 속에서 許浚은 宣祖 29년(1596) 임금의 命을 받아 儒醫 鄭碏·太醫 楊禮壽·金應鐸·李命源·鄭禮男 등과 함께 內醫院에 編輯局을 설치하고 새로운 醫書의 編纂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丁酉再亂이 일어나 醫官들이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일

---

1) 1941년 8월 1일 忠南 禮山에서 出生하여, 靑陽農高와 東洋醫藥大學 韓醫學科를 卒業(1964)하고, 大田大 大學院(1991), 慶山大 大學院課程(醫史學專攻)을 畢하고 1996년 『朝鮮時代前期의 醫療制度에 대한 硏究』로 韓醫學博士學位를 받았다. 1988년 大韓韓醫師協會 40年史 編纂委員長으로서 協會史를 만들고, 1991년 許浚先生 照明事業을 시작하여 社團法人 醫聖許浚紀念事業會 事務處長으로서 許浚의 失傳墓所 發見, 龜岩公園造成의 發意, 許浚銅像 建立, 龜巖學報 製作 등 일을 추진하였다. 現 經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外來敎授와 龜巖學會長 및 (社)醫聖許浚紀念事業會 理事이면서, 韓大熙韓醫院(성북구 하월곡동 90-123, 전화 02-912-8800)을 運營하고 있다.

시 중단되고 말았다.

그 뒤 宣祖는 다시 許浚에게 命하여 單獨으로 醫書 편찬의 일을 맡기면서 內藏 方書 500여 권을 주고 이를 參考하게 하였다. 許浚은 內醫院에서 御醫로 奉職하면서도 이 책의 편찬에 전념하여 光海君 2년(1610) 25卷 25冊 3,127面의『東醫寶鑑』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그 당시의 醫學 知識을 총망라한 臨床 醫學의 百科全書로서 內景·外形·雜病·湯液·鍼灸 등 5篇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5대 綱篇 아래에 疾病에 따라 項과 目을 定하고 그 항목 밑에는 해당되는 病論과 藥方들을 出典과 함께 자세하게 열거하여 각 病症에 관한 古今의 處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病症에 따른 單方과 鍼灸法을 附記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經驗을 기록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實用化할 수 있도록 記述하고 있다.

이 책의 編纂 過程에서 特히 注目할 것은 각 病症의 項과 目이 病症을 중심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例로 內景篇의 津液項에 汗證의 處方을 보면, 먼저 그 脈法과 原因을 밝히고, 그 다음에 自汗·盜汗·頭汗·心汗·手足汗·陰汗·血汗·黃汗으로 汗證을 8目으로 분류하여 臨床醫들이 환자를 대했을 때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많은 책을 參考하지 않더라도 쉽게 古今의 醫書들을 열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편찬하는 데는 世宗 때 만들어진 『鄕藥集成方』과『醫方類聚』, 宣祖 때의 醫林撮要』, 伏羲氏 때의 著作으로 알려진 『天元王冊』, 神農의 著作이라는 『本草』,『素問』,『靈樞經』등 古典 方書들과『傷寒論』『脈經』『丹溪心法』 등 漢·唐 이후 편찬된 70여종의 醫方書등 모두 83종의 醫書를 引用하였던 것이다.

『東醫寶鑑』은 이처럼 방대한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編纂되었기 때문에 그 內容이 매우 우수하여 東洋 醫學의 寶鑑으로 認定되어 국내에서 출판된 뒤, 日本과 中國에서도 계속 出版됨으로써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貴重한 東洋의 臨床 醫學書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韓國人이 著述한 것으로 이 책처럼 中國人과 日本人들에게 널리 읽힌 책은 아마 없을 것이다.

許浚은 이 책을 完成한 후에도 世祖 때 편찬된『救急方』을『諺解救急方』으로 註解하였으며, 任元濬의『瘡疹集』을 다시 편찬한 뒤 이를 諺解하여 『諺解痘瘡集要』라는 이름으로 刊行하였다. 또 盧重禮의『胎産要錄』도 다시 편찬한 후 이를 諺解하여『諺解胎産集要』라는 이름으로 刊行하였다. 그리고 당시 流行하던 傳染病을 치료하기 위해『新纂辟瘟方』과 『辟疫新方』을 編纂하여 刊行하는 등 새로운 醫書의 編纂과 타인이 저술한 醫書의 改撰 및 醫書의 諺解에 큰 業績을 이룩함으로써 韓國醫學의 發達에 寄與하였던 것이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業績을 남긴 許浚의 활동과 관계되는 일부 새롭게 밝혀진 資料를 拔萃하여 提供함으로써 許浚 또는 當代에 활동하였던 醫官 등 人物을 연구하는 데 便宜를 도모하고자 한다.

Ⅱ. 許浚에 關聯된 資料

本稿에서 記述하고자 하는 許浚에 관련된 資料는『眉巖日記』·『宣祖實錄』·『光海君日記』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고찰에 앞서 最近에 알려진〈太平會盟圖屛風〉[2]에 記錄되어 있는 許浚의 出生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出生年

許浚의 生年月日은 1546년(丙午, 明宗 卽位年) 3월 5일로 알려지고 있으나[3] 陽川許氏의 世譜에는 '明宗丁未1547年生宣祖甲戌登第壬辰御醫辛丑資憲同樞丙午崇祿'이라 기록되어 있으므로 族譜에 의하면 그는 1547年(明宗 2)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1998년 國立 晉州博物館에서 <壬辰倭亂 特別展>을 開催할 때 公開된 <太平會盟圖屛風>에서 許浚의 出生에 관한 새로운 사실이 發見되었다. 博物館의 收藏庫에서 保管되어 오다가 展示된 이 屛風 그림은 壬辰倭亂이 끝난 뒤인 1604년(宣祖 37)에 壬辰倭亂 때 宣祖를 모시고 義州로 피난한 扈聖功臣들의 契會 모임을 그린 것이다. 契會圖 옆에는 座目이 收錄되어 있는데 許浚에 대한 細註를 보면 <忠勤貞亮扈 聖功臣崇政大夫陽平君許浚 淸源 己亥生 本陽川>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己亥年은 中宗 34년에 해당되는 1539년이다.

그동안 筆者를 포함한 旣存의 거의 모든 硏究者들이 許浚의 出生年을 1546년 또는 1547년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 그림에 있는 記錄으로 보아 그의 生年은 修正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契會圖를 作成하던 1604년(宣祖 37)에는 許浚이 當時 御醫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生存해 있던 당시에 그의 生年을 잘못 記錄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許浚의 出生年은 1539년(中宗 34)으로 訂正해야 한다고 본다.

(2).『眉巖日記』

1991년 9월 李鍾馨이 <許浚先生과 東醫寶鑑>[4]에서

---

2) 寶物 668號. 크기는 63×112㎝ 이다. 권오현의 所藏資料이지만, 현재 國立晉州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同博物館에서 펴낸 <壬辰倭亂> 1998년版 P.178에 收錄되어 있는 이 그림은 1604년 壬辰倭亂 때의 功臣들이 모여 契會를 연 場面을 그린 것으로, 筆者가 本稿의 後面에 關係當局의 許可를 받아 轉載하였다.

3) 韓大熙; 許浚의 生涯에 對한 考察, 1991, 龜巖學報 1卷, P.90

4) 李鍾馨; 許浚先生과 東醫寶鑑, 龜巖學報 1991, 제1호, P.49.
三木 榮; 朝鮮醫事年表, 日本 京都, (株)思文閣出版, 1985, P.309-313.

> 1569年(宣祖 2년) 6월 先生의 나이 24세때 副提學 柳希春의 夫人의 舌腫病의 治療를 위해 서울로 招致된 先生은 다음해에는 柳希春의 病患도 先生의 醫術로서 治療되자 그 名聲이 서울 장안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어 內醫院 醫科에 取才되어 內醫院에서 醫官으로 勤務하게 되었다.(眉巖日記草)

라고 三木榮이 쓴 글을 引用하여 發表한 바 있다.

이렇게 許浚과 柳希春은 일찍부터 交分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柳希春이 許浚의 嫡三寸 叔父인 김시흡(金時洽)과 親交가 있어 그의 소개로 許浚이 往來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5] 『眉巖日記』의 著者인 柳希春은 中宗33년(1538) 別試文科에 及第한 후 여러 벼슬을 지내다가 明宗 2년(1547) 良才驛의 壁書事件에 연루되어 流配되었다가 풀려난 후 全羅道 觀察使 등을 지낸 뒤 吏曹 參判으로 辭職하고 落鄕하였다. 그의 著書인 『眉巖日記』는 1567년에서 1577년(宣祖 10)까지 약 11년간에 걸친 公私의 經歷을 쓴 것인데, 朝鮮시대 개인의 日記 중 가장 방대한 것으로 貴重한 史料가 되고 있다. 이 『日記』에서 柳希春은 자신의 日常生活과 당시 조정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론 京外 각 官署의 기능과 官吏들의 內面的 생활 및 社會·經濟·文化·風俗 등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 柳希春과 『眉巖日記』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편의 論文이 발표된 바가 있으므로,[6] 本稿에서는 이 『日記』의 내용 중에서 許浚과 관계되는 부분과 楊禮壽와 이공기(李公沂)의 일부만 拔萃하여 記載하고자 한다.

拔萃한 內容中 許浚과의 關聯은 다음과 같이 무려 36곳에서 發見된다.
끝의 괄호안은 柳希春의 日記 作成 당시 官職이며 숫자는 眉巖日記의 卷數와 쪽번호이다.

○1567년(丁卯-明宗 22) 10월 1일. 柳希春의 眉巖日記가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날부터 시작된다.

柳希春은 1547年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濟州, 鍾城에서 19년동안 流配生活을 하고 1567년 宣祖가 卽位하게 되자 赦免되어 直講 兼 知製敎에 再登用되어 忠淸道 恩津에서 上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

5) 金澔: 16세기 후반 17세기초 醫官 許浚의 생애 再考, 韓國文化 21, 1998, pp.146-155 참조.

6) 그동안에 발표된 柳希春과 그의 日記인 『眉巖日記』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구완회: 「朝鮮 中葉 士族孽子女의 贖良과 婚姻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慶北史學』 8, 1985. ②정재훈: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남명학연구』 3, 1993. ③李成妊: 「16세기 朝鮮 兩班官僚의 仕宦과 그에 따른 收入 -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145, 1995. ④李成妊: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 -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 『震檀學報』 80, 1995.

○1568년(戊辰-선조 즉위년) 1월 29일. 許浚도 왔다가 갔다.(柳가 司憲府 掌令 時 서울.社稷洞으로 가서 새海南 군수 李君士英을 찾아보고 집으로 돌아오니 許가 왔다가 갔다. Ⅰ-168)

○1568년(戊辰-선조 즉위년) 2월 20일. 許浚이 와서 인사를 했다.(柳가 弘文館 應敎 時, Ⅰ-202)
○1568년(戊辰-선조 즉위년) 2월 22일. 許浚이 『老子』『文則』『造化論』의 세 책을 보내왔다. 아주 고맙고 또 기쁘다.(Ⅰ-205)

○1568년(戊辰-선조 즉위년) 4월 7일. 許浚이 왔다가 갔다.(司諫 時.Ⅰ-265)

○1568년(戊辰-선조 즉위년) 4월 20일. 許浚이 『左傳』10冊과 唐本 『毛氏詩』를 보내왔다.(Ⅰ-289)

○1568년(戊辰-선조 즉위년) 6월 24일. 許浚이 와서 인사를 하므로 부채를 줬다.(應敎 時.Ⅰ-397)

○1568년(戊辰-선조 즉위년) 7월 17일. 許浚도 왔다가 갔다.(Ⅰ-427)

○1569년(己巳-선조 2) 6월 6일 許浚을 초청하여 羅(羅士愃)兄의 병을 가 봐 달라고 했더니 와서 하는 말이 "氣가 虛해서 中風이 된 것인데 아직 치료가 가능하고 羌活散이 가장 妙합니다." 하였다. (大司成 時.Ⅱ-28)

○1569년(己巳-선조 2) 6월 23일. 許浚이 부름을 받고 와 (부인의) 舌腫病을 논의하고 갔다.(大司成 時.Ⅱ-56)

○1569년(己巳-선조 2) 6월 29일. 내가 어제부터 얼굴의 좌측에 종기가 생겨 許浚의 말을 듣고 지렁이의 즙을 발랐다.(大司成 時.Ⅱ-62)

○1569년(己巳-선조 2) 閏6월 3일. 許浚을 위하여 吏判(筆者 註: 洪 曇, 號는 太虛)에게 편지를 보냈다. 內醫院으로 천거를 해준 것이다.(大司成 時,Ⅱ-66)
筆者 註; 曇 ; 날흐릴담

○1569년(己巳-선조 2) 7월 2일. 許浚이 와서 말하기를 申昕의 병이 비록 重하지만 치료 될 수 있다고 했다.(大司成 時.Ⅱ-96)

○1569년(己巳-선조 2) 7월 2일. 許浚이 와서 人事를 하기에 宋四宰(筆者 註 ; 宋 純 1493-1583)의 病을 가보게 했다.(大司成 時.Ⅱ-97)

○1569년(己巳-선조 2) 7월 15일. 許浚이 와서 羅德明의 약재를 이야기하고 갔다.(大司成 時. Ⅱ-110)

○1569년(己巳-선조 2)년 9월 9일. 許浚도 와서 小兎絲의 丸藥지을 일을 의논했다.(左副承旨 時, Ⅱ-167)

○1569년(己巳-선조 2) 12월 1일. 김시흡(金時洽)은 孝子 副正 金有誠의 孫이며 許浚의 嫡3寸 叔父이다.(譯者 註 ; 嫡母外家의 外叔이란 뜻, 弘文館 副提學 時,Ⅱ-230)
筆者 註 嫡母 ; 庶子가 아버지의 正室을 일컫는 말, 큰어머니.

○1569년(己巳-선조 2) 12월 11일. 官舍에 있을 때에 奉事 金時洽을 보았다.(Ⅱ-238)

○1569년(己巳-선조 2) 12월 29일. 午時에 光州에 당도하니 金時洽 閔漑도 와서 만났다.(Ⅱ-247)

○1570년(庚午-선조 3) 4월 29일 名醫 楊禮壽가 왔다. 내가 부른 것이다.(Ⅱ-263)

○1570년(庚午-선조 3) 5월 5일 淸風(부채)을 楊禮壽에게 보냈다.(Ⅱ-274)

○1570년(庚午-선조 3) 5월 7일. 아침에 許浚이 와서 인사를 하고 夫人이 먹을 吳茱庾丸을 상의하고 갔다.(Ⅱ-276)

○1570년(庚午-선조 3) 6월 6일. 許浚이 나의 부름을 받고 와서 韓景斗, 金晋을 봐주고 갔다. (Ⅱ-391)

○1570년(庚午-선조 3) 6월 12일. 楊醫 禮壽가 와서 말하기를 瓊玉膏 한제는 하얀 항아리로 하나가 되는데 일년 동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Ⅱ-408)

○1570년(庚午-선조 3) 6월 30일. 許浚이 와서 羅仲부의 아들 濕藥인 胃苓湯을 논의하고 갔다.
胃苓湯의 값 白米 3斗를 우선 許浚에게 보냈다.(Ⅱ-439)

○1570년(庚午-선조 3) 8월 1일. 楊禮壽가 와서 나의 맥을 짚어보고 갈아앉고 늘어지게 뛴다면

서 壽할 징조라고 했다.(Ⅱ-490)

○1570년(庚午-선조 3) 8월 12일. 許浚이 왔다가 갔다.(Ⅱ-505)

○1570년(庚午-선조 3) 8월 23일. 우선 司藥房으로 들어가 高山里 僉使 李愚를 맞나고 또 許浚을 불러다가 宋君直의 약을 논의했다.(Ⅱ-514)

○1570년(庚午-선조 3) 9월 22일. 許浚이 8兩의 二黃元을 지어 가지고 왔다.(Ⅱ-546)
姜源 季淸이 술을 가지고 와서 은근하게 마셨는데 許浚 金晉 韓景斗도 참여했다.(Ⅱ-546)

○1570년(庚午-선조 3) 9월 25일. 許浚이 降心湯 10첩을 지어 보냈다.(Ⅱ-550)

○1570년(庚午-선조 3) 11월 3일. 許浚이 왔다가 갔다.(禮房 承旨 時, Ⅱ-593)

○1570년(庚午-선조 3) 12월 12일. 許浚이 준 二黃元의 8兩 1劑를 夫人에게 주어 먹게 했다.(Ⅱ-622)

○1571년(辛未-선조 4) 11월 2일. 僉知 李遴,…… 內醫 僉正 許浚, 生員 許筴이 모두 왔다가 갔다.(大司憲 時.Ⅲ-281)

○1571년(辛未-선조 4) 11월 7일. 許浚이 와서 말하기를 全羅道의 藥材 牛黃을 오늘 무사히 內醫院에 바쳤다고 한다.(大司憲 時.Ⅲ-286)

○1571년(辛未-선조 4) 11월 27일. 집에 돌아오니 許浚이 뵈이러 와 있었다. 팥 1斗를 許浚의 母에게 보냈다.(大司憲 時.Ⅲ-309)

○1571년(辛未-선조 4) 11월 29일. 希春은 晝講의 特進官[7]이므로 藥房에서 잠시 쉬면서 許浚과 만나 보았다.(大司憲 時.Ⅲ-311)

○1572년(壬申-선조 5) 12월 6일. 權得卿과 許浚이 와서 나는 술을 대접해서 보냈다.(Ⅲ-455)

○1573년(癸酉-선조 6) 1월 1일. 元日에 명함을 던지고 간 사람은 申汝楫, 楊大樹,……, 醫員 許浚,……30명이다.(Ⅲ-489)

---

7) 김용삼; 조선 오백년 역사 대탐험, 서울, 동방미디어, 1996, P.318.
特進官; 임금의 경연에 참석하는 官員.

○1573년(癸酉-선조 6) 3월 8일. 許浚이 와서 鄭判書(筆者 註; 戶曹判書 鄭宗榮)의 편지를 받아 갔다. 이는 內醫院 提調處에 鹿茸을 求하는 것이다.(大司憲 時.Ⅲ-604)

○1573년(癸酉-선조 6) 7월 5일. 아침에 光雯을 시켜 蘇兵使 瀹에게 가서 사례를 하게했더니 瀹이 鹿茸을 보내왔다. 때마침 許浚이 왔기에 나는 作末을 해달라고 맡겼다.(禮曹 參判 時.Ⅳ-55)

○1573년(癸酉-선조 6) 9월 7일. 개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禮曹에 上官할 작정을 하고 있는데 養賢 主簿가 成均館의 捉魚公事 (고기잡이를 허락하는 公事)를 가지고 와서 묻기에 나는 그들의 간사한 꾀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金龜瑞와 金彦鳳이 왔다가 갔다. 卯時 末에 나는 坐起의 請을 기다리지 않고 南宮으로 갔다. 三間屛門의 北에 이르러 河原君(鋥)을 만나 피해 들어오니 河原君라고 請하며 원래 正二品과 從二品은 피하지 않게되어 있다고 했다. 行하여 三間 屛門에 가까이 가니 參議 姜公(士弼)이 출근을 했다. 나는 參議가 祇迎을 한뒤에 들어가 공손히 禮를 받았는데 나는 東壁의 交椅에 가서 앉고 參議로 하여금 私禮만 행하고 물러가게 했다. 다시 앉아 六郎廳을 보았는데 公服으로 參見禮를 행하였다. 나는 各班의 禮를 除하라고 命하고 사람을 시켜 判書에게 보고 하게 하니 判書 鄭公宗榮이 그제야 와서 參判과 參議의 祇迎을 받았다. 그 뒤에 參判과 參議가 물러나 公服을 입고 다시 나아가 펴논 자리에서 서로 절을 하고 번갈아 물러난 뒤에 郎廳이 모두 公禮를 行했다. 그런 뒤에 내가 들어가 行禮를 하고 함께 交椅에 앉아 惠民署의 取才를 提調인 工曹判書 宋麒壽에게 請하여 惠民署의 醫 56人에게 試講을 했는데 銅人經 素問 (모두 醫書) 2書를 講하게 했다. 通이 많고 略이 적은 者를 9人을 취해 祿을 주게 했다.(筆者 註 ;禮曹 參判 時.Ⅳ-153)

○1573년(癸酉-선조 6) 11월 3일. 內醫 正 許浚과 石守道가 와서 인사를 했다.(禮曹 參判 時.Ⅳ-253)

○1574년(甲戌-선조 7) 3월 4일. 光龍(筆者 註: 希春 兄의 參子)이 와서 名醫 李公沂를 보았다.(Ⅳ-449)

○1574년(甲戌-선조 7) 3월 26일. 內醫 許浚이 와서 인사를 하므로 나는 光龍(筆者 註;兄의 孫子)의 병을 보라고 했더니 浚이 말하기를 平胃元에 麥門冬을 가하고 淸肺飮등의 약을 써야 한다기에 이를 命하였다.(Ⅳ-482)

○1574년(甲戌-선조 7) 5월 18일. 어제 許浚으로 더불어 尹寬中의 濕渴證을 논하자 乾葛桑枝湯이 좋다고 하더니 오늘은 桑枝湯 몇첩을 보냈다.(經筵 時.Ⅳ-569)

○1577년(선조 10) 5월 13일까지 日記를 쓰고 14일은 病患이 極히 危重하여 日記를 적지 못하고 15일에 作故했다.

日記는 그간 대략 11년간에 걸친 것으로 中間에 약간 빠진 부분도 있으나 朝鮮時代 個人의 日記중 방대한 것으로 史料로서의 價値가 크다

以上을 檢討해 볼 때 許浚은 1568년 1월 29일 30歲以前부터 이미 26年 年上인『眉巖日記』[8]의 筆者 柳希春(1513-1577)[9]과 김시흡(金時洽)을 통하여 깊이 알고 지내왔음을 볼 수 있다. 1568년에 柳希春에게 『老子』『文則』『造化論』이란 책을 보낸 것을 볼 때 相互 높은 認識을 갖고 있었고, 1569년 閏6월에 許浚(31歲)을 內醫院에 薦擧하는 內容의 편지를 柳希春이 吏曹 判書인 洪曇에게 써 보낸 內容이 있고, 1571년 11월에는 內醫院 僉正(筆者 註; 僉正은 從四品 벼슬임)이었던 것으로 보아, 許浚이 內醫院에 奉職하게 된 것은 柳希春의 薦擧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3)『宣祖實錄』

8) 李海燮; 眉巖日記, 第1卷, 光州,潭陽鄕土文化硏究會, 1992, P.12.

眉巖日記; 寶物 第260號인 眉巖日記는 朝鮮祖 宣祖 때의 學者 柳希春의 親筆日記이다. 現在 남아있는 日記는 1567年(宣祖 卽位年) 10月 1日에 시작하여 1577年(宣祖 10年) 5月 13日까지 대략 11年間에 걸친 것으로 중간에 약간 빠진 部分이 있으나 朝鮮시대 個人의 日記 中 가장 방대한 것으로 史料로서의 가치가 크다.

그 內容은 자신의 日常生活과 당시 朝廷에서 일어난 事件은 물론, 京外 각 官署의 기능과 官吏들의 내면적 生活 및 社會,經濟,文化,風俗 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편 壬辰倭亂으로 1592年(宣祖 25年) 以前의 承政院日記가 모두 불타버리고 없어져 <宣祖實錄>을 편찬할 때 宣祖實錄 첫 10年間의 史料가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日記草 가운데 제12책에는 附錄으로 眉巖과 그 부인 宋氏(號 德峯)의 詩文과 雜錄도 收錄되어 있다.

이 日記는 지금까지 全南 潭陽郡 大德面 章山里에 있는 眉巖선생의 祠堂에 보관하여 왔는데, 최근 後孫에 의해 뜰 앞에 있는 蓮塘안에 石造建物을 짓고 그 안에 保管하고 있다.

이 日記는 1936년 朝鮮總督府가 飜譯한 일이 있다.

9) 柳希春; 1513年-1577年(中宗 8-宣祖 10年).

朝鮮時代의 文臣으로 字는 仁仲, 號는 眉巖, 諡號는 文節로 本貫은 善山이다. 女流文人 宋德峯(副提學 駿의 둘째딸)의 남편이며 崔山斗, 金安國의 門人으로 1538年(中宗 33) 別試文科에 丙科로 及第하고 1544年 賜暇讀書한 다음 修撰· 正言 등을 지냈다. 1547年 壁書의 獄(乙巳士禍)에 연루되어 濟州道에 流配되어, 濟州.鍾城(咸鏡北道)에서 19년 동안 流配생활을 하고 1567年 宣祖가 卽位하게 되자 赦免되어 直講 겸 知製敎에 再登用되었다. 이어 大司成, 副提學, 全羅道觀察使,大司憲 등을 역임하고 1575年(宣祖 8) 吏曹參判을 지내다가 辭職하였다. 經史와 性理學에 조예가 깊어 『眉巖日記』『續諱辨』『朱子語類箋解』『詩書釋義 』『獻芹錄』『歷代要錄』『綱目考異』 등의 著書를 남겼고, 左贊成에 追贈되어 潭陽의 義巖書院, 茂長의 忠賢祠, 鍾城의 鍾山書院에 祭享되었다.

『宣祖實錄』中에서 許浚에 관한 記錄을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1575년(선조 8) 2월 15일 명의 안광익·허준이 진맥하다

명의(名醫) 안광익(安光翼)·허준(許浚)이 들어가서 상의 맥(脈)을 진찰하고는, 상이 전에 비해 더 수척하고 비위의 맥이 매우 약하며 또 번열(煩熱)이 많아 찬 음식드시기를 좋아하고 문을 열어 놓고 바람을 들어오게 한다고 하였다.[10]

○1581년(선조 14). 許浚이 王命을 받아『纂圖方論 脈訣集成』 4卷 4冊을 校正·編纂하다.[11]

○1587년(선조 20) 12월 9일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내의원에 상을 내리다

상의 건강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의원 도제조(內醫院都提調) 유전(柳琠), 제조 정탁(鄭琢), 부제조 김응남(金應南)에게 아다개(阿多介) 1좌(座)를 내리라 명하고, 어의(御醫) 양예수(楊禮壽)·안덕수(安德秀)·이인상(李仁祥)·김윤헌(金允獻)·이공기(李公沂)·허준(許浚)·남응명(南應命) 등에게는 각기 녹피(鹿皮) 1영(令)을 내려 주었다.

○1590년(선조 23) 12월 25일 간원이 훈련 봉사 권연종의 추고, 허준·이의득의 가자 개정, 군수 이희득의 포상 개정을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훈련 봉사(訓鍊奉事) 권연종(權連宗)은 부장(部將)과 변장(邊將)을 위해서 이조 참판 이증(李增)의 서간(書簡)을 위조하여 병조 판서 이양원(李陽元)에게 청했으니 그 용심의 무상(無狀)함은 물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의금부에 내려 추고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신들이 정청(政廳)에서 전교를 보건대, 내의(內醫) 허준(許浚)이 왕자를 치료했다고 하여 가자(加資)할 것을 특명하였는데, 허준이 비록 구활(救活)한 공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체가 양전(兩殿)의 시약청 의원(侍藥廳醫員)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전하께서 한때의 기쁜 마음에 따라 종전에 없던 상전(賞典)을 과하게 베푸시는 것은 불가하니 개정을 명하소서.

안주목사(安州牧使) 이희득(李希得)은 인물이 용렬하고 본래 물망(物望)이 없어 서방(西方)의 요해지를 맡기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특명으로 이원익(李元翼)을 대신하게 하고 가선 대부의 중가(重加)까지 제수하였습니다. 전일 희득이 고을을 다스릴 적에 약간의 명성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발탁 승진되는 은전을 입었습니다. 더구나 지금 부임도 하기 전에

10) 서울시스템(株): 增補版 (CD-ROM) 국역 조선왕조실록Ⅰ-Ⅳ,서울시스템 주식회사,1995년.

11) 이 책은 六朝時代의 高陽生이 편집한 것이지만, 許浚의 跋文에 의하면 고양생이 晋王叔和의『脉經』을 剽竊하여 만든 것으로 글이 鄙淺하고 본뜻을 잃은 것이기 때문에, 허준이 그 잘못을 교정하여 개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은 『脉經』을 底本으로 하고, 希范·潔古·雲岐子·通眞子 등의 脈論을 집성하여 편집한 醫書로 교육과 치료에 활용되었으며, 조선중기의 대표적 診脈書로 평가되고 있다(孫弘烈:「朝鮮中期 醫術과 醫藥의 發達」,『國史館論叢』56, 1994, p.229 참조).

미리 포장(褒奬)을 가하는 것은 정체(政體)를 손상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물정이 매우 은편치 못하게 여기니 개정하소서.

신들이 구언 전지(求言傳旨)를 보건대 '주장(奏狀)이 잇따른다.' 고 하였는데, 주(奏)자는 우리 나라의 어떤 문서에서도 쓸 수 없는 글자입니다. 왕언(王言)이 일단 내려가면 사방이 다 보게 되는 것인 만큼 더더욱 근엄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색승지(色承旨)가 자세히 살피지 못했으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심합니다. 추고하여 치죄하소서. 또 주(奏)자는 다른 글자로 고쳐 뒷날 오류를 답습하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작상(爵賞)은 국가의 공기(公器)인 만큼 진실로 일호라도 외람되면 공이 있는 자는 해체(解體)되고 공이 없는 자는 넘보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언춘(朴彦春)이 체포될 적에 봉산 군수(鳳山郡守) 이대화(李大和)는 별다른 공로가 없었음에도 은연히 속여 보고하여 자기의 공으로 삼았으니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본도(本道)가 추열(推閱) 중에 애매모호하게 두어 마디 한 것을 가지고 외람되이 중가(重加)를 줄 수 있겠습니까. 급히 고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희득·이대화·허준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1591년(선조 24) 1월 3일. 사헌부가 아뢰었다. "왕자께서 편찮으시자 힘을 다해 調護한 끝에 기쁨을 얻었으니 그 수고는 진실로 상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벼슬을 높이는 일은 侍藥廳 최고의 恩典이어서 등급이 매우 엄격하니 名器는 아껴야 합니다. 어찌 외람되게 恩典을 함부로 베풀어 뒤 폐단을 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許浚에게 賞加하라는 命을 도로 거두소서"

司諫院이 아뢰기를, "왕자가 병이 있어 許浚이 약을 써서 치료한 것은 醫官으로서의 직분인 것인데 堂上官의 加資를 제수하였으니 兩殿을 侍藥한 공과 혼동 되어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爵賞의 참람됨이 이보다 더 심한 것이 없으니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憲府에 답하기를, "許浚은 論할 필요가 없다"하고, 諫院에 답하기를, "允許하지 않는다" 하였다.

○1591년(선조 24) 1월 4일 헌부가 허준의 가자 개정, 주부 신경희의 개정과 이양원의 파직을 논하다

○1591년(선조 24) 1월 4일. 사간원이 전에 아뢴, 許浚의 당상관 加資를 환수할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오랬동안 近侍의 자리에 있었는데 한 자급을 더해 주는 것은 불가한 것이 아니다. 지난해 痘瘡이 매우 위험했었는데 閭閻에서는 한 집안에서 잇달아 죽은 경우도 있다니 놀라고 참담함을 느꼈다. 이번 아이의 누이도 痘瘡으로 잃었다. 불과 열흘 사이에 위급해져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었는데 다행이도 다시 살아난 것은 許浚의 공이니, 加資하지 않으면 그 공을 갚을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조정의 뜻을 어찌 강력히 거절하겠는가.

임금의 상은 곧 은택인데 어찌 전례가 있을 것이며 상의 등급을 논할 수 있겠는가. 내가 조정에게 한 자급을 빌리고 싶으니 조정에서도 허락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司憲府가 전에 아뢴 許浚의 가자를 개정해야 한다는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윤허하지 않는다"

○1591년(선조 24) 1월 5일. 司諫院이 전에 아뢴 許浚·李大禾·李希得의 일을 入啓하니, 允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許浚·李陽元의 일을 入啓하니,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591년(선조 24) 1월 6일 헌부가 신경준·허준·이양원의 일을 아뢰니 논하지 말라고 답하다.

○1591년(선조 24) 1월 6일. 司諫院이 아뢰기를, 전에 아뢴 許浚·李大禾·李希得의 일을 入啓하니, 답하기를, "이미 윤허하지 않는다"고 효유하였다. 사헌부가 전에 아뢴, 申景禧·許浚·李陽元의 일을 입계하니, 답하였다. "許浚의 일은 따를 것이면 망설이겠는가?

○1591년(선조 24) 1월 7일. 司諫院이 전에 아뢴, 李大禾·李希得·許浚의 일을 入啓하니, 답하였다. "允許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다 일렀다"

○1592년(선조 25) 4월 14일. 壬辰倭亂이 발발하자 王이 宮을 떠나 義州까지 播遷하는데 許浚도 扈從하였다.[12)]

○1592년(선조 25) 6월 1일 난이 일어나자 명망있는 진신들이 모두 도망하다
애초에 상이 경성을 떠날 때 요사스런 말이 갖가지로 퍼져 국가가 틀림없이 망할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명망있는 진신(縉紳)들이 모두 자신을 온전하게 할 계책을 품었다. 수찬 임몽정(任蒙正)은 하루 먼저 도망하여 떠났으며,【몽정은 임국로(任國老)의 맏아들이다.】 정언 정사신(鄭士信)은 도성 서남 쪽에 이르러 도망하였고, 지평 남근(南瑾)은 연서(延曙)에 이르러 도망하였으며, 그 나머지 낭서(朗署)와 여러 관사는 제멋대로 흩어져 떠났고, 산반(散班)과 외신(外臣)은 한 사람도 따르는 자가 없었다. 평양에 이르러 대사성 임국로는 어미의 병을 핑계대고, 이조 좌랑 허성(許筬)은 군사를 모집하겠다고 핑계대고, 판서 한준(韓準), 승지 민준(閔濬), 참판 윤우신(尹又新)은 서로 잇따라 흩어져 떠났고, 노직(盧稷)은 영변에서 뒤에 떨어졌다가 도망하였다.
상의 행차를 따르던 제신(諸臣)들도 서로 이르기를 '강문(江門)에 이르면 늙고 병든 사람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 하면서 모두 견고한 뜻이 없었는데, 홍진(洪進)만은 울면서 이항복에

12) 韓大熙; 許浚의 生涯에 대한 考察, 구암학보 1호, 1991, P.91.

게 말하기를 '시종하는 신하는 어려운 때에 마땅히 임금을 따라야 한다. 나는 한낱 오활한 선비이니 세자를 따른다 해도 무슨 공을 세울 수 있겠는가. 죽든 살든 상의 행차를 따르겠다.' 하였다. 세자를 따르거나 왕자를 따르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경성에서 의주(義州)에 이르기까지 문관·무관이 겨우 17인이었으며, 환관(宦官) 수십 인과 어의(御醫) 허준(許浚), 액정원(掖庭員)4~5인, 사복원(司僕員) 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상이 내관(內官)에 이르기를,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구나."

하였다. 환관과 사복원에 대해서는 뒷날 모두 녹공(錄功)하였는데, 끝내 직사(職事)는 맡기지 아니하였다.

상이 정주(定州)에 머물렀다. 사자(使者)를 의주에 보내어 거가가 본주(本州)에 머물며 곧바로 요동으로 건너가지 않는다는 것을 효유하여 군민(軍民)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게 하고 응교 심희수(沈喜壽)를 보내어 행궁(行宮)을 수리하게 하였다. 그리고 잇따라 차관(差官)을 보내 자문(咨文)으로 요동의 진에 알리도록 하고, 이덕형에게 위급하고 박절한 상황을 극력 진달하도록 유시하였다.

○1592년(선조 25) 12월 9일. 上의 健康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內醫院 都提調 柳 煐·提調 鄭 琢·副提調 金應南에게 阿多介 1座를 내리라 命하고, 御醫 楊禮壽·安德秀·李仁祥·金允獻·李公沂·許浚·南應命 등에게는 각기 鹿皮 1令을 내려 주었다.

○1595년(선조 28) 4월 13일. 上이 別殿 便房에서 醫官 許浚 등을 불러서 鍼灸를 맞고, 藥房 都提調 등을 入侍케 하다

○1595년(선조 28) 4월 13일 진시에 별전 편방에서 의관들을 접견하다

진시(辰時)에 상이 별전(別殿) 편방(便房)에 나와 의관(醫官) 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이공기(李公沂)·박춘무(朴春茂)·김영국(金榮國)·정희생(鄭希生) 등을 인견하고 침구(鍼灸) 치료를 받았는데, 약방 도제조(藥房都提調) 김응남, 제조 홍진(洪進), 부제조 오억령(吳億齡) 등이 입시하였다.

○1596년(선조 29) 3월 3일. 上이 전교하였다. "東宮(光海君)이 미령했을 때의 內醫院 都提調 金應南과 提調 洪 進에게 각각 熟馬 1필을, 副提調 吳億齡·趙仁得에게는 각각 兒馬 1필을 사급하라. 許浚은 東班職에 加資하고, 金應鐸·鄭禮男은 모두 陞職시키라"- 許. 金. 鄭 세 사람은 醫官이다.

○1596년(선조 29) 3월 12일. 卯時 정각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周易>을 講하였다. 낮에 왕세자가 문안하였다. 諫院이 아뢰기를, "지난번 東宮이 병이 있을 때 御醫 등이 약을 의논한 작은

공로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곧 職分內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중한 가자를 내리거나 東班에 서용하여 爵賞이 외람되었으므로 공론이 몹시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許浚만을 가자하고 鄭禮男·金應鐸 등의 동반직은 모두 개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1596년(선조 29) 5월 11일. 上이 別殿에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入侍하고, 藥房提調 金應南·副提調 吳億齡·醫官 楊禮守·許浚·李公沂·朴春茂·沈發·金榮國 등이 입시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上의 症候를 자세히 알아야 침을 놓을 수 있읍니다"

王이 許浚에게 完備된 우리나라 醫書를 纂集하라는 命이 있어, 許浚이 儒醫 鄭碏·太醫 楊禮壽·金應鐸·李命源·鄭禮男 등과 같이 設局하고 撰集을 시작하다

○1597년(선조 30년). 倭軍의 丁酉再亂으로 醫官들이 離散하고 醫書 編纂 作業도 霧散되니 그 後 王이 許 浚에게 單獨으로 撰述토록 命하다.[13]

○1597년(선조 30) 4월 14일 침을 맞다

사시(巳時)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갔다. 이명증(耳鳴症) 때문에 면부(面部)의 청궁(聽宮)·예풍(翳風), 수부(手部)의 외관(外關)·중저(中渚)·후계(後谿)·완골(腕骨)·합곡(合谷), 족부(足部)의 대계(大谿)·협계(俠谿) 등을 각각 두 혈(穴)에 침을 맞았고, 편허증(偏虛症) 때문에 수부의 견우(肩髃)·곡지(曲池)·통리(通里)와 족부의 삼리(三里)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고, 겨드랑이 밑에 기류주증(氣流注症)이 있어서 족부의 곤륜(崑崙)·양릉천(陽陵泉)·승산(承山) 등 각각 두 혈에 침을 맞았다. 도제조 김응남(金應南), 제조 홍진(洪進), 부제조 오억령(吳億齡),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壽)·허준(許浚)·이공기(李公沂)와 침의(針醫) 5명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창문이 모두 닫혀 어두워서 침을 놓기가 불편하다면 열어도 괜찮다."

하니, 의관 등이 아뢰기를,

"열어 놓으면 침을 놓을 때에 명쾌하겠습니다."

하고, 드디어 한 칸의 창문을 열었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들이 여러 의관과 밖에서 상의한 바에 의하면, 요사이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서 침을 맞기에 온당치 못하다고 하여 아랫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놓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생각은 기어코 맞고 싶다."

하였다. 홍진이 아뢰기를,

"의방(醫方)에, 침을 놓을 때는 뜸을 뜨지 않고 뜸을 뜰 때는 침을 놓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침과 뜸을 함께 실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13) 韓大熙; 許浚의 生涯에 대한 考察, 구암학보 제1호, 1991, P.92.

"겨드랑 밑에 기류증이 있어서 한쪽이 너무 허(虛)하니, 반드시 쑥김[艾氣]을 들이는 처방이 좋을 것 같다."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뜸뜨는 법에 반드시 50장(壯)이나 1백 장을 떠서 다 진무른 뒤에 그만둔다고 하였으니, 이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기어코 뜨시겠다면 차라리 잠시 쑥김만 들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번의 쑥김을 들이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였다. 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의관 정사민(鄭士敏)의 말을 듣건대, 우각(牛角)으로 뜨는 뜸은 한 번만으로도 효과를 본 자가 있다고 하였고, 신도 가슴을 앓는 자가 한 번의 뜸으로 효과를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필코 많이 떠야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침을 놓은 뒤에 뜸을 뜨는가?"

하자, 의관들이 아뢰기를,

"먼저 침으로 통기(通氣)를 하고 나서 쑥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경락(經絡)에 이미 침을 놓고 나서 또 쑥김을 들인다면 이미 열기가 있게 되는데, 이 뒤에 또 침을 놓고 뜸을 뜬다면 반드시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침을 다 놓은 뒤 맨 마지막에 우각으로 뜨고 쑥김을 들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 방법을 외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침의가 의논하여 하라."

하니, 침의들이 아뢰기를,

"침을 놓고 또 뜸을 뜨고 또 침을 놓는다면 도리어 손상이 있을 것이니, 침을 다 놓은 뒤에 뜸을 뜨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리고 오른손의 굴신(屈伸)하는 곳에 어떤 기운이 이따금 내려 잠깐 사이에도 있다 없다 하고 또 당길 적도 있다. 오른편 겨드랑 밑에 기가 도는 듯하고 오른편 무릎이 늘 시리고 아픈데 대체로 오른편이 더욱 심하다. 그리고 이따금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증상이 있고 온몸에 땀이 나지 않아도 이쪽은 땀이 나는데 또 추위를 견디지 못할 적도 있다."

하니, 의관들이 아뢰기를,

"이는 풍기(風氣)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습담(濕痰)이 소양경(少陽經)에 잠복해 있어서 그러기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아랫 부위에 침을 맞을 적에는 병풍을 앞에 가리라고 명하였다. 억령 등이 아뢰기를,

“전부터 침을 맞으실 적에는 신이 늘 입참(入參)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발을 벗고 앉아서 재신(宰臣)을 접견하기가 미안하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근시(近侍)의 반열에 있으면서 침을 맞으실 적에 입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미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풍 밖에 있으면 된다.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아랫 부위에 침을 맞은 뒤에 병풍을 걷으라고 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침을 맞을 적에 아픈 줄도 모르고 또 피도 나지 않았으니, 이러고도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하니, 의관이 아뢰기를,

“통기만 하였을 따름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른편과 왼편을 일시에 점혈(點穴)하고서 침을 놓았는가?”

하니, 의관이 아뢰기를,

“오른편의 허한 곳에 침을 놓으면 더욱 허해지기 때문에 오늘은 왼편에만 침을 놓았습니다. 오른편은 다음 날에 놓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헤아려서 하라.”

하였다. 침 놓기를 마친 뒤에 약방 제조(藥房提調) 및 의관들이 차례로 나갔고, 왕세자는 문안 때문에 들어와 머물러 모시다가 침을 마친 뒤에 동궁(東宮)으로 돌아갔다.

○1600년(선조 33) 10월. 首醫 楊禮壽가 死亡함에 따라 許浚이 首醫가 되다.

○1601년(선조 34).『胎産集要』를 編纂・諺解하다.

○1601년(선조 34) 3월 24일. 上이 便殿에 御하여 受鍼하다. 왕세자가 入侍하고 약방제조 등과 醫官 許浚 등이 入侍하다.

○1601년(선조 34) 3월 25일. 진시에 上이 편전으로 나아가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入侍하고, 藥房 都提調 金命元・提調 柳 根・副提調 尹 暾・醫官 許浚・李公沂・金榮國・許 任이 입시하였는데, 巳時에 끝내고 나갔다. 閤門 밖에서 賜酒하라고 命하였다.

○1601년(선조 34) 4월 15일. 上이 內醫 許浚과 堅霖에게 入診하도록 命하였다.

○1601년(선조 34) 4월 20일. 內醫 許浚과 李公沂・堅霖 등에게 入診하도록 命하였다.

○1604년(선조 37) 6월 25일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義州)까지 시종 어가(御駕)를 모신 사람을 호성공신(扈聖功臣)으로 삼고, 왜적을 정벌한 제장(諸將)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선무공신(宣武功臣)으로 삼고, 이몽학(李夢鶴)의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 공신(淸難功臣)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봉호(封號)를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에는 이항복・정곤수(鄭崐壽).

2등에 신성군 이우(信城君李玗)・정원군 이부(定遠君李琈)【이 분이 원종 대왕(元宗大王)이다.】

・이원익(李元翼)・윤두수(尹斗壽)・심우승(沈友勝)・이호민(李好閔)・윤근수(尹根壽)・유성룡・김응남(金應南)・이산보(李山甫)・유근(柳根)・이충원(李忠元)・홍진(洪進)・이괵(李괵)・유영경(柳永慶)・이유징(李幼澄)・박동량(朴東亮)・심대(沈岱)・박숭원(朴崇元)・정희번(鄭姬藩)・이광정(李光庭)・최흥원(崔興源)・심충겸(沈忠謙)・윤자신(尹自新)・한연(韓淵)・해풍군 이기(海豊君 李耆)・순의군 이경온(順義君李景溫)・순령군 이경검(順寧君李景儉)・신잡(申磼)・안황(安滉)・구성(具宬).

3등에 정탁(鄭琢)・이헌국(李憲國)・유희림(柳希霖)・이유중(李有中)・임발영(任發英)・기효복(奇孝福)・최응숙(崔應淑)・최빈(崔嬪)・여정방(呂定邦)・이응순(李應順)・절신정 이수곤(節愼正 李壽崑)・송강(宋康)・고희(高曦)・강인(姜絪)・김기문(金起文)・최언순(崔彦恂)・민희건(閔希蹇)・허준(許浚)・이연록(李延祿)・김응수(金應壽)・오치운(吳致雲)・김봉(金鳳)・김양보(金良輔)・안언봉(安彦鳳)・박충경(朴忠敬)・임우(林祐)・김응창(金應昌), 정한기(鄭漢璣)・박춘성(朴春成)・김예정(金禮禎)・김수원(金秀源)・신응서(申應瑞)・신대용(辛大容)・김새신(金璽信)・조귀수(趙龜壽)・이공기(李公沂)・양자검(梁子儉)・백응범(白應範)・최윤영(崔潤榮)・김준영(金俊榮)・정대길(鄭大吉)・김계한(金繼韓)・박몽주(朴夢周)・이사공(李士恭)・유조생(柳肇生)・양순민(楊舜民)・경종지(慶宗智)・최세준(崔世俊)・홍택(洪澤)・이춘국(李春國)・전용(全龍)・이희령(李希齡)・오 연(吳連) 등 총 86인이요, 내시(內侍) 24인, 마의(馬醫) 6인, 의관(醫官) 2인, 별좌 사알(別坐司謁) 2인이다.

선무 공신은 1등에 이순신・권율・원균, 2등에 신점(申點)・권응수・김시민・이정암・이억기, 3 등에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충원(柳忠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 등 총 18인이다.

청난 공신은 1등에 홍가신(洪可臣), 2등에 박명현(朴名賢)・최호(崔湖), 3등에 신경행(辛景行)・임득의(林得義) 등 모두 5인이다.

호성 공신(扈聖功臣) 1등은 충근정량갈성효절협책(忠勤貞亮竭誠效節協策)의 호를 내리고, 2등

은 갈성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효절협책의 4자를 줄였다.

선무공신(宣武功臣) 1등은 효충장의적의협력(效忠仗義迪毅協力)의 호를 내리고, 2등은 적의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협력 2자를 줄였다.

청난 공신(淸難功臣) 1등은 분충출기합모적의(奮忠出氣合謀迪毅)의 호를 내리고, 2등은 합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적의 2자를 줄였다.

○1604년(선조 37) 7월 2일. "반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날마다 두세 가지 약을 먹다보니 봄과 여름동안 마주 대한 것이 藥爐뿐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효험을 보지 못하니, 아마도 그약이 증세에 맞는 것이 아니고 의관들도 같은 약만을 쓰려고 하는 것인 듯하므로 각각 소견을 써서 아뢰게 한 것이다.---

許浚의 경우는 諸書에 널리 통달하여 약을 쓰는 데에 노련하고, 李命源도 노숙한 醫官이므로 범상한 솜씨가 아닐 듯한데, 이들이 어찌 감히 망령되이 생각했겠는가" 하였다.

○1604년(선조 37) 9월 23일. 上이 이르기를, "침을 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許浚이 아뢰기를, "증세가 긴급하니 상례에 구애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침을 맞으시는 것이 미안한 듯하기는 합니다마는, 針醫들은 항상 말하기를 "반드시 침을 놓아 熱氣를 해소시킨 다음에야 통증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小臣은 침놓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그들의 말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許任도 평소에 말하기를 "經脈을 이끌어낸 뒤에 阿是穴에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듯합니다" 하였다. 上이 병풍을 치라고 命하였는데, 왕세자 및 의관은 방안에 入侍하고 提調 이 하는 모두 방 밖에 있었다. 南嶸이 穴을 定하고 許任이 침을 들었다. 上이 침을 맞았다.

○1604년(선조 37) 10월 23일. 備忘記로 일렀다. "지난번 위에서 偏頭痛을 앓아 침을 맞을 때의 藥房 都提調인 左議政 柳永慶에게는 內廐馬 1필을, 提調 平川君 申磏과 都承旨 朴承宗·鍼醫 許任·南嶸에게는 각각 한 資級을 加資하라. 金榮國은 陞職시키고 御醫 許浚에게는 熟馬 1필을 하사하고, 趙輿男은 實職에 붙이라. 二等掌務官들에게는 각기 兒馬 1필씩을, 湯藥使令들에게는 각각 목면 2필과 布子 1필씩을, 庫直·書員에게는 각각 木棉 1필과 布子 1필씩을 賜給하라"

○1604년(선조 37) 10월 29일. 扈聖功臣의 교서를 반급할 적의 別敎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대들의 공로를 버릴 수 없음은 세상 사람들을 면려시키기 위한 당연한 일이요,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일은 가장 우선라는 정사이다. (중략)이에 李恒福·鄭崑壽를 1등에 책훈하고,(중략)李元翼·尹斗壽 등은 2등에 책훈하고, 鄭琢·許浚·李公沂 등은 3등에 책훈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품계와 관작을 한 자급을 초천한다(후략).

○1605년(선조 38) 9월 17일. 諫院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鍼을 맞으면서 조섭하는 중

에 계시니, 御醫는 참으로 일각이라도 멀리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陽平君 許浚은 품계가 높은 醫官으로서 君父의 병을 생각하지 않고 감히 사사로운 일로 태연히 말미를 청하였으며, 정원이 추고를 청한 후에도 기탄하는 바가 없이 자신의 뜻대로 行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분개하고 있으니 먼저 파직시키고서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許浚은 功臣에 封해진 후라서 掃墳하고자 하는 것은 정리에 당연하니 허락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말미를 받아 내려갔으니 또한 불가하지는 않지만 이와같이 아뢰니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1605년(선조 38) 9월 19일. 諫院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바야흐로 攝養中에 계시는 때라서 약을 제조하는 신하는 멀리 떠날 수가 없는 것인데 許浚은 태연해 사사로운 일로 말미를 청하였으며, 政院이 이에 대해 치죄를 청하였는데도 반성하며 기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군부의 병환을 생각지 않고 두려워해야 할 공론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 그의 교만 방자한 죄를 추고로만 징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시키고 뒤에 추고할 것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許浚은 그 사정이 절박하니 추고하는 것이 가하다. 어찌 반드시 국문하고 파직할 것까지야 있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許浚은 聖恩을 믿고 교만을 부리므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1606년(선조 39) 1월 3일. 司諫院이 아뢰기를, "위에서 해를 넘기며 조섭한 결과 이처럼 병이 낫게 된 것은 온 나라 臣民들이 다같이 경축할 일입니다. 諸臣 가운데 聖躬을 調護한 자는 侍藥한 공이 있기는 하나 陽平君 許浚은 위인이 어리석고 미련하였는데 은총을 믿고 교만했다 - 이미 1品에 올랐으니 이것도 벌써 분수에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輔國의 資級으로 올려 大臣과 같은 班列에 서게 하였으니, 이것이 어떠한 官銜인데 그에게 제수하여 名器를 욕되게 하고 朝廷에 羞恥를 끼치십니까. 예부터 醫官이 임금의 병에 공효를 바친 일이 반드시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높은 資級 중한 官秩이 이처럼 僭濫된 적은 없었습니다. 듣고 본 모든 사람은 놀라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賞典이 어찌 그에 알맞게 베풀 만한 것이 없겠습니까. 許浚의 加資를 속히 개정하소서" 하니 上이 이르기를, "允許한다. 유사 당상은 파직할 필요 없다. 許浚이 높은 品階에 올랐어도 크게 방해로울 것이 없으니 개정할 필요 없다" 하였다.

司憲府가 아뢰기를, "지난해 玉候가 미령하시어 오랫동안 조섭중에 계시다가 해를 넘긴 뒤에 비로소 회복되었으니, 위에서 시약한 노고를 생각하여 특별히 은전을 베푸는 것은 마지 못할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輔國의 加資가 이 어떠한 爵秩인데 경솔히 적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어 후세에 웃음을 사려 하십니까. 楊平君 許浚이 한때 약간의 노고가 있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상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둘러 正1品의 높은 자급으로 올려주어 名器를 욕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醫官이 崇祿이 된 것도 전고에 없던 것으로 이것만도 이미 그지없이 외람한데, 더구나 이 輔國은 대신과 같은 班列인데 말해 뭐하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許浚이 부당하게 차지할 자리이겠습니까. 物情이 모두들 놀라와하고 있으니 속히 개정하게 하소서" 하니 上이 개정할 필요 없다고 답하였다.

○1606년(선조 39) 1월 3일 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1606년(선조 39) 1월 4일 헌부에서 양평군 허준·거산 찰방 홍사즙을 탄핵하다

○1606년(선조 39) 1월 4일. 사간원이 전계한 楊平君 許浚에게 내린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뢰니, 답하였다. "浚은 功臣이니 輔國으로 올려주더라도 안 될 것 없다. 개정할 것 없다" 司憲府가 전계한 陽平君 許浚에게 내린 가자를 개정할 것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居山驛은 남도와 북도의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이처럼 邊警이 많은 때일수록 調發과 傳報에 대한 일이 여느 역에 비해 더욱 긴요합니다. 새로 부임한 찰방 洪思楫은 인물이 오활하여 결코 그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체차시키고 그 대임은 근실하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잘 가려서 보내소서" 하니, 上이 답하기를, "윤허한다. 許浚은 공신이니 正1品으로 올려주어도 크게 방해로울것이 없다. 개정할 것 없다" 하였다.

○1606년(선조 39) 1월 5일. 司諫院이 아뢰기를, - 전계는 陽平君 許浚의 加資 개정에 관한 일이었다. - 하니, 上이 말하기를, "許浚은 아직 부원군의 호를 내리지 않았으니 輔國으로 올려주는 것은 괜찮다. 양사는 허락할 것이요 굳이 고집할 필요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李祗言의 일은 윤허한다" 하였다. 사 헌부가 아뢰니, - 전계인 陽平君 許浚의 加資 개정에 관한 일이다. - 답은 사간원에 한것과 같았다.

○1606년(선조 39) 1월 5일 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1606년(선조 39) 1월 6일 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1606년(선조 39) 1월 6일. 司憲府가 아뢰니, -전계인 양평군 許浚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上이 답하였다. "許浚의 일은 吏曹의 下批대로 가자만 하고 부원군에는 封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개정할 필요없다. 사간원이 아뢰니, 답은 사헌부에 한것과 같았다.

○1606년(선조 39) 1월 7일. 司憲府가 아뢰니, -전계인 陽平君 許浚의 가자에 관한 일이다. -답하였다. "輔國으로 올려주어도 방해로울 것이 없다. 가자가 輔國이더라도 府院君에는 封하지 않았으니 사체에 맞는 일인 듯하다. 개정할 필요없다" 사간원이 아뢰니, -전계인 陽平君 許浚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답은 사헌부에 한것과 같았다.

○1606년(선조 39) 1월 7일 간원에서 양평군 허준을 탄핵하다

○1606년(선조 39) 1월 8일 헌부에서 양평군 허준·선천 군수 이경유·강릉 참봉 정융 등을

탄핵하다

○1606년(선조 39) 1월 8일. 사간원이 아뢰니,-전계인 陽平君 許浚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답하였다. “여느 功臣과는 다르나 방해로울 것이 없다. 번거롭게 논집할 필요없다.”

○1606년(선조 39) 1월 9일. 사간원이 아뢰니, - 전계인 陽平君 許浚의 가자 개정에 관한 일이다.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사헌부가 아뢰니, -전계인 陽平君 許浚의 加資 개정에 관한 일이다.-윤허한다고 답하였다.

○1606년(선조 39) 4월 26일. 사시에 上이 별전에서 침을 맞았다. 왕세자가 入侍하였다. 藥房 都提調 柳永慶・提調 許 頊・副提調 尹昉・記事官 任章・朴曾賢・金聲發・御醫 許浚・趙興男・李命源・鍼醫 南嶸・許任・金榮國이 入侍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午時 초에 파하고 나왔다.

○1606년(선조 39) 4월 29일. 왕세자가 입시하였다. 藥房 都提調 柳永慶・提調 許頊・副提調 崔天健・御醫 許浚・李命源・趙興男・鍼醫 南嶸・許任・金榮國이 입시하였다. 침을 맞고 나서 사시 말에 파하고 나왔다.

○1606년(선조 39) 5월 2일. 醫官 許浚 등이 入侍 受鍼.

○1606년(선조 39) 5월 4일. 御醫 및 鍼醫 入侍下에 受鍼하다.

○1606년(선조 39) 5월 6일. 御醫 및 鍼醫 入侍下에 受鍼하다.

○1606년(선조 39) 9월 14일. 巳時 초에 上이 便殿에서 침을 맞았다. 藥房 都提調 柳永慶・提調 韓浚謙・副提調 李尙毅・記事官 兪學曾・曺明勗・兪好曾・御醫 許浚・趙興男・李命源・鍼醫 南嶸・許任・金榮國・柳季龍이 入侍하였다. 巳時 末에 침을 맞는 일이 끝났다.

○1606년(선조 39) 9월 16일. 藥房 都提調 柳永慶・提調 韓浚謙・副提調 李尙毅・御醫 許浚・趙興男・李命源・鍼醫 南嶸・許任・金榮國・柳季龍이 입시하였다. 사시 말에 침맞는 일이 끝났다.

○1606년(선조 39) 9월 18일. 上이 별전에 나아가 침을 맞았는데, 왕세자가 入侍하였다. 藥房 都提調 柳永慶・提調 韓浚謙・副提調 李尙毅・記事官 兪學曾・尹衡彦・曺明勗・御醫 許浚・趙興男・李命源・鍼醫 南嶸・許任・金榮國・柳季龍이 入侍하였다. 침을 맞는 일이 끝나고 巳時

末에 파하였다.

○1607년(선조 40). 許浚이 諺解한『諺解胎産集要』 1冊을 內醫院에서 開刊하다.[14]

○1607년(선조 40) 10월 9일 침방을 나오다가 쓰러지니 세자가 밤새 곁에서 간호하다

○1607년(선조 40) 10월 9일. 해돋을 무렵 왕세자가 問安하려고 동궁에서 나오는데 內人이 上의 患候가 위급하다고 전언하였다. - 未明에 上이 起寢하여 房밖으로 나가다가 氣急하여 넘어졌다고 하였다. - 왕세자가 수레에서 내려 급히 달려가 入侍하였다. 藥房 都提調 柳永慶・提調 崔天健・副提調 權愔・記事官 睦取善 李善行・朴海・御醫 許浚・趙興男・李命源이 入侍하고 말을 전하는 內官과 약을 가진 醫官들이 寢室 밖 대청에 많이 들어와 있었다. - 延興府院君 金悌男도 스스로 입시했다.- 上이 일어나지 못하고 意識이 들지 않으니, 淸心元・蘇合元・薑汁・竹瀝・鷄子黃・九味淸心元・皀莢沫・陳米飮 등 약을 번갈아 올렸다. 上이 기후가 조금 안정된 후에, “이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하고 급히 소리지르니, 왕세자가 손을 저어 左右를 나가게 하였다. 藥房 都提調 이하가 閤門안으로 물러나 대령하였다.

藥房에 전교하기를, “조금 전 나의 症勢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았는지 醫官에게 하문하라” 하였다. 약방이 회계하기를, “오늘은 날씨가 몹시 추운데 아침 일찍 起動하시어 寒氣가 밖에서 엄습한 탓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증세는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니 人蔘順氣散 1服을 속히 진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申時에 上의 呼吸이 다시 가빠지니 侍藥廳 都提調 柳水慶・提調 崔天健・副提調 權愔・記事官睦取善・李善行・朴海・御醫 許浚・趙興男・李命源이 入侍하고, 內官・醫官 등과 김제남도 스스로 入侍하였다. 上이 오래도록 깨어나지 못하자 청심원・소합원・강즙・죽력・계자황 등 약을 번갈아 올리니 상의 호흡이 조금 안정되었다. 유영경 이하가 모두 합문 안으로 물러갔다. 왕세자가 대내에서 侍疾하였다.

○1607년(선조 40) 11월 1일 양사가 송석경・유경종을 파직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14) 이 책은 許浚이 宣祖 34년(1601)『諺解救急方』『諺解痘瘡集要』와 함께 편찬하여 동 41년(1608) 내의원에서 開刊한 産科專門 醫書이다. 이것은 盧重禮의『胎産要錄』을 藍本으로하여 『醫學入門』과 『醫學正傳』을 주로 참고하였으며, 그 외에『古今醫鑑』『婦人大全良方』 등 9종의 의서를 참고하여 改撰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胎産要錄』을 藍本으로 하였다 하나, 사실은 그 뒤에 수입된 明代 醫書를 주로 하여 改撰한 것이기 때문에 조선전기 産科學의 신지식을 정리한 새로운 의서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한글로 번역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용하였음은 물론 醫女와 産婆의 교육에도 활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許浚의 이러한 저술 활동은 조선의 産婦人科學 발달에 크게 공헌한 것이라 하겠다(孫弘烈:「朝鮮中期 醫術과 醫藥의 發達」,『國史館論叢』56, 1994, p.218 참조).

○1607년(선조 40) 11월 1일. 양사가 宋錫慶·柳慶宗을 논하여 파직할 것을 청하니 상이 따랐다. 당시 상의 병이 오래도록 낫지 않으니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許浚이 御醫로서 약을 일맞게 쓰지 못했다 하여 시끄럽기 그지없었다. 이에 司諫 송석경과 장령 유경종이 허준의 죄를 논하려 하였으나 동료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모두 引避하였다. 玉堂이 경종의 避辭 가운데 雜藥을 너무 많이 제조해 함부로 썼다는 한 조목은 당사자를 모함한 것이라고 논하여 체직시켰다. 이에 金大來가 석경을 대신하여 사간이 되었는데, 마침내 앞장서서 논하기를 "석경 등이 「약을 잘못 썼다」는 논의를 假托하여 서로 唱和하면서 때를 보아 몰래 선동하여 뒷날 남에게 화를 전가시킬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하며, 사헌부와 말을 맞춰 석경 등의 파직을 청하니, 상이 즉시 윤허하였다. 당시에 유영경이 약방 도제조였으므로 경종 등이 먼저 허준을 논한 다음에 영경의 지위를 동요시키려 하였다. 드러자 대래가 영경의 鷹犬으로서 급히 경종 등을 경격하였으니 영경을 위해 사람등의 입을 틀어 막는 것이 이와 같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3일. 사간 宋錫慶이 아뢰었다. "성후의 미령하심이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되니 藥을 쓰는 일은 매우 긴요하고도 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陽平君 許浚은 首醫로서 자기 所見을 고집하여 경솔히 毒한 藥을 썼으니 罪를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臣이 엊그제 동료들에게 發論하니 모두들 '許浚의 罪는 國人이 모두 알고 있다. 이는 지극히 公正한 論評인데 누가 감히 異意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다음날 齊坐하여 논계하기로 이미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齊坐에 헌납 宋 보의 簡通을 보건대 '이러한때 갑자기 首醫를 論罪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였습니다. 同僚의 議論이 일치되지 않았으니 형편상 구차스럽게 贊同할 수 없습니다. 臣을 체직시켜 주소서"

正言 具鉛가 아뢰기를 "성후가 미령하신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약의 효험을 보지 못하여 아직까지 평복되지 않으시니 온 나라 신민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陽平君 許浚은 首醫로서 약을 잘못 썼으니 참으로 죄가 있습니다. 司諫 宋錫慶이 논죄하고자 한 것은 공론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 논계하려고 하였는데, 獻納 송보가 병으로 집에 있으며 동료에게 간통하기를 '許浚은 참으로 죄가 있다. 그러나 侍藥廳을 설치하고 주야로 대령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갑자기 수의를 논죄하였다가 만일 뜻하지 않게 약을 의논 할 일이 생긴다면 주가 주장하겠는가? 그리고 성궁을 조섭하는 데 크게 해로운 것은 소요스러움이다. 그러므로 지난번 장령 유경종이 이 일을 의논하고자 하여 간통하는 즈음에 번잡하고 소요스러울까 우려하여 발론했다가 중지했다. 우선 성후가 조금 안정되시기를 기다려 시약청을 파한 후에 서서히 논죄하여도 늦지 않다' 하였습니다. 신의 소견도 송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 재직하여 동료를 처치할 수 없으니 신을 파직시키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대사간 柳澗이 아뢰었다. 성후가 오랬동안 조섭중에 계시니 온 나라 臣民이 근심으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陽平君 許浚은 首御醫로서 약을 의논함에 있어 마땅함을 잃어 너무 찬 약제를 함부로 써서 성후가 오래도록 평복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群下의 절박한 심정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간 송석경이 用藥을 잘못한 罪를 論하고자 하였는데, 臣은 성

후가 정양중에 계신데 御醫의 論罪를 청하는 것은 소요스러울 듯이 느껴졌으므로 성후가 쾌복하신 후에 서서히 論罪하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뜻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석경의 논집을 끝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臣의 생각에도 許浚의 罪는 國人이 모두 알고 있으니 참으로 조금도 용서할 수 없다고 여겨 臣도 同意했으나 다만 논계에 早晩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早晩의 차이 때문에 이미 發論한것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동료들과 함께 議論하여 오늘 齊坐에서 相議하여 처리하려 했는데 헌납 송보가 갑자기 疝症으로 同參하지 못하고 석경은 동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하여 引避하기까지 하였습니다. 許浚을 論罪하려고 한 것은 臣이 석경과 다를 것이 없으니 형평상 구차스럽게 재직하여 동료를 處置할 수 없습니다. 臣을 체직시켜 주소서"

사간원에 答하였다. "醫官의 習性은 원래 毒한 藥을 쓰기를 좋아한다. 대체로 醫藥은 미묘한 것이라서 쉽게 論議할 수 없다. 이처럼 미령한 때에 首醫를 논박하여 罪를 줄 수 없으니 바라건데 論罪하지 말고 그의 醫術을 극진히 할 수 있게 하라. 더구나 번거롭고 소란스러우면 더욱 편치 않다. 辭職하지 말라." - 물러가 勿論을 기다렸다.

※ 이들 이외에 헌납 송보·유경종 등이 허준의 탄핵문제로 引嫌하였다.

○1607년(선조 40) 11월 13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간 유간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3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正言 구혜가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3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헌납 송보가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3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유경종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4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正言 任章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4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헌 홍식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4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집의 유희분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14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장령 이구징·지평 남복규·성시헌이 인혐하다

○1607년(宣祖 40) 11월 14일. 正言 任章·大司憲 洪暹·執義 柳希奮·掌 令 李久澄·持平 南復圭·成時憲 등이 御醫 許浚 탄핵 문제로 引嫌하는등 선조의 건강 관리에 대한 首醫 許浚의

능력이 문제되었다.

허준 등 의관들의 侍藥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臺諫이 引嫌한 것에 대해 藥房 都提調 柳永慶・提調 최천건・副提調 권희 등이 대죄하였다.

○1607년(선조 40) 11월 20일. 御醫 許浚 彈劾 問題로 司諫 김대래・헌납 송보・정언 구혜・대사간 유간・정언 임장 등이 引嫌하였다.

○1607년(선조 40) 11월 20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사간 김대래가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20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헌납 송보와 정언 구혜가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20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간 유간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20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정언 임장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21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장령 윤양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21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대사헌 홍식・장령 이구징・지평 남복규・성시헌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21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집의 유희분이 인혐하다

○1607년(선조 40) 11월 21일. 어의 허준 탄핵 문제로 장령 윤양・대사헌 홍식・장령 이구징・지평 남복규・성시헌・집의 유희분 등이 인혐하였다.

○1607년(선조 40) 12월 3일. 전교하였다. 砂糖元을 들이자마자 또 四味茶를 청하니 내일은 또 무슨 약과 무슨 차를 계청하려고 하는가. 醫官 중에 許浚은 실로 의술에 밝은 良醫인데 약을 쓰는 것이 경솔해 신중하지 못하다. 이러한 뜻을 알고서 처방하지 않아선 않된다.

○1607년(선조 40) 12월 3일 약을 신중히 의논해 들이라 전교하다

○1608년(선조 41) 2월 1일. 上이 貞陵洞 행궁에 있었다. 이날 未時에 玉候가 갑자기 危急하니, 정원과 사관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差備門안으로 들어왔다. 왕세자가 들어왔다. 약방 제조 崔天健은 차비문 안으로 들어왔고 도승지 柳夢寅은 呈告하였으나 숙배하지 않았으므로 追後하여 들어왔다. 薑汁・竹瀝・導痰湯・龍腦蘇合元・開關散 등 1복을 또 들여왔다.

왕세자가 어의로 하여금 들어가 진찰하게 하였는데 어의가 나와서 말하였다.

“일이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왕세자가 下令하였다. “熱 치료하는 약을 미리 준비하라”

내전에서 전교하여 부르기를, “大臣 및 原任大臣들은 모두 들어오라” 東宮이 대신에게 하령하였다. 內殿께서 하교하기를 ‘지금 성상이 정침에서 승하하셨다’ 고 하니, 망극하다”

持平 申光立과 正言 具혜가 와서 아뢰기를, “1년이 넘도록 侍藥하였으나 약을 쓴 것이 효험이 없어 마침내 昇遐의 슬픔을 당했으니 御醫 등을 잡아다 추국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答하였다.

(4) 『光海君日記』

『光海君日記』中에서 許浚에 대한 記錄을 拔萃하면 다음과 같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2월 1일. 대신이 御醫 許浚 등을 데리고 들어가서 진찰을 하였으나 상의 氣候는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신들이 울면서 나왔다. <조금 있다가 哭聲이 대내에서 밖으로 들려 왔다> [上이 薨(훙:죽을훙)하였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10일. 사간원에서 아뢰기를, “許浚이 본시 음흉하고 범람한 사람으로 자신이 首醫가 되어 藥을 씀에 있어 많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잘못을 저질러 망녕되이 극히 찬 藥을 써서 마침내 先王께서 돌아가셨으니 청컨데 다시 국문하여 法에 따라 죄줄 것을 命하소서.” 王이 답하되, “許浚이 醫術이 적어 이 지경에 이르렀다하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正律은 부당하다. 윤허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14일. 司憲府에서 아뢰기를 “許浚을 멀리 귀양 보낼 것을 請합니다” 王이 좇지 않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15일. 兩司가 또 許浚의 귀양 보낼 것을 請하니 王이 답하되 “이미 유시했다. 윤허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16일. 兩司에서 아뢰기를 “御醫 許浚이 망녕되이 雜된 藥을 써서 마침내 先王을 돌아가시게 했으니 청컨데 法에 따라 罪를 주소서” 王이 불윤하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17일. 兩司에서 또 아뢰니 王이 답하되 “이제도 국문할 생각은 없다. 이미 削職하였으니 門外黜送으로 加할 것이다”

○1608년(광해 즉위년) 3월 18일. 兩司가 또 국문할 것을 아뢰니 王이 답하되 “이미 그 職을 뺏고 또 門外 送黜하였으니 국문할 뜻은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20일. 兩司에서 또 許浚에 대하여 法에 의하여 定罪할 것을 청하니 답하되 “許浚의 일이 이미 유시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21일. 兩司가 아뢰기를 “許浚을 法律에 의하여 定罪하소서. 王이 답하되 이미 유시했다. 허락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22일. 사간원에서 許浚을 다시 국문하여 定罪할 것을 請하니 답하되 “許浚을 中途付處하라”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23일. 사간원이 잇따라 허준과 홍여순의 죄에 대해 논하니, 답하기를, “허준은 이미 中途付處했는데 다시 논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하였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26일. 兩司에서 계속하여 許浚에게 罪줄 것을 請하니 答하되 “이미 유시한 것이다. 윤허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27일. 사간원에서 또 許浚의 罪를 論하니 답하되 “許浚을 이미 쫓았으니 이제 論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司憲府에서 連하여 아뢰어 許浚의 罪를 청하니 답하되 “이미 放逐하였으니 번거로이 하지 않는 것이 가하리라.

○1608년(광해 즉위년) 3월 27일 사헌부가 연계하여 허준을 죄줄 것을 청하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3월 28일. 司諫院에서 연하여 許浚의 罪줄 것을 청하니 쫓지 않았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4월 24일. 사간원에서 연하여 아뢰기를 許浚의 圍離安置[15]를 청하니 답하되 “許 浚이 옛적에 내가 어릴때부터 功勞가 많았을 뿐 아니라 근래 나의 疾病이 이어지는데 이 곳의 醫員들 醫術이 고루하나 구태여 放還시키지 않음은 公論의 소중함에 있다. 듣건데 죄인 스스로 징집 근신하고 있다하니 모름지기 罪를 더하지 못 할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1608년(光海君 즉위년) 11월 22일. 王이 전하여 이르기를 “許浚이 비단 扈聖功臣일 뿐 아니

15) 圍離安置; 重罪人을 流配하고 그 住居에 가시로 울타리를 하여 出入을 制限시킴.

라 나를 위하여 手苦가 많았던 사람이다. 근래에 내가 마침 病이 많으나 內醫院에 경험이 많은 훌륭한 醫員이 적은데 하물며 귀양가서 한 해가 지났으니 그 罪를 징구함에 족하다. 이제 가히 귀양을 풀어 주라"

○1608년(光海君 즉위년) 11월 23일. 司諫院에서 아뢰기를 "許浚이 본시 흉악하고 참혹하며 도리에 어긋난 악한 사람으로서 御醫의 우두머리가 되어 先王의 극진한 은총을 받았는데도 조금도 근신하는 마음이 없이 망녕되이 雜된 藥을 써서 마침내 國喪을 당했으니 그 罪狀은 반드시 죽여야 할 터인데 특별히 너그러운 은전을 베풀어 다만 귀양만을 보내어 法에 어긋남이 심하므로 中外 여론이 분분하여 분한 마음으로 탄식하는 자가 많은데도 이제 불의에 석방하라는 분부를 들으니 심히 놀랍습니다. 許浚의 罪惡은 先王에 관련된 지엄한 바이오니 청컨데 釋放의 명령을 還收하소서" 답하여 이르기를 "許浚의 죄가 이미 귀양을 보내어 징구되었으니 놓아 주어라"

○1608년(光海君 즉위년) 11월 24일. 司諫院에서 연하여 아뢰기를 "許浚의 釋放 명령을 거두기를 청하니 답하되 "이미 유시한 것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11월 26일. 司諫院에서 연하여 許浚의 釋放 명령을 還收하기를 청하여 아뢰니 답하되 "윤허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11월 27일. 司諫院에서 또 전같이 아뢰니 답하되 "순수한 본뜻(원정)으 로 法을 쓰면 사람이 그 罪에 복종하는 것인데, 이제 論하는 罪는 그 뜻이 아닌 것 같다. 윤 허하지 않는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11월 30일. 司諫院이 또 아뢰니 "許浚은 내가 이미 참작한 것이니 윤허 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12월 1일. 司諫院에서 연하여 前과 같이 아뢰니 답하되 "法으로 사람을 다스림에 불가불 원정에 따라 죄를 정하게 된다. 許浚의 귀양은 原情에 의한 것으로 한해를 지 나 放還케 한 것은 刑罰을 잘못한 것이 아니다. 내 또한 참작한 것이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1608년(光海君 즉위년) 12월 2일. 司諫院이 연하여 許浚의 釋放 명령 환수를 제청하니 이미 유 시한 것이니 윤허치 않는다고 답하였다.

○1608년(光海君 즉위년) 12월 3일. 司諫院이 전과 같이 또 제청하니 답하되 "시약함에 있어

종시 許浚의 藥씀을 아는지라 醫術이 부족하면 그 효험이 없을 것이니 정성껏 처신하는 그 뜻 을 가히 용서코자 함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所信대로 옳다고 생각하면 시행하는 고로 석 방해라 했다. 이제 내가 病이 있으나 內醫 中에 老成한 자가 없어 이에 放還케하여 藥을 물어 서 쓰도록 하고자 함이니 내가 어찌 事體를 헤아리지 않고 이같이 하였겠는가. 번거롭지 않게 함이 옳을 것이다.

○1609년(光海君 1) 4월 21일. “죄인 許浚의 죄악은 온 나라 사람이 다 아는 바라 다시 논할 필 요가 없습니다. 정배된 후에도 기탄없ㅇ디 방자하여 태연스럽게 출입하기를 평인과 다름없이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潛商人들과 내통하며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본래 흉악패려한 사람으 로서 항상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미 뜻밖의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청컨대 위리 안치를 명 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허준에 대해서는 그가 아찌 방자하게 원망을 품 는 일이 있겠는가. 내버려두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1609년(광해군 1) 4월 23일. 사간원이 계속 아뢰어 趙誼를 파직하고 허준을 위리안치할 것을 청하니, 답하기를, “조의는 이미 추고하였고 허준은 원지로 유배했으니,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다. 번거롭게 하지 말라”하였다.

○1609년(광해군 1) 4월 24일. 司諫院이 연계하여 조의를 파직하고 허준을 위리안치하라고 청하 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허준은 옛날 내가 어렸을 때에 많은 공로를 끼쳤다. 근래 나의 질병이 계속되고 서을에 있는 의원들의 술업이 고루한데도 감히 그를 방환하지 못하는 것은 공론을 중 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가 이런 기별을 들으면 의당 경계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죄를 가중할 필 요는 없다. 번거로이 논집하지 말라”하였다.

○1609년(광해군 1) 11월 22일. 전교하였다. “許浚은 扈聖功臣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다. 근래에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內局에는 노성한 宿醫가 적다. 더구나 귀양살이 한 지 해가 지났으니,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

사신은 논한다. 허준은 온 나라의 죄인이니, 상이 어떻게 사사로이 할 수 있겠는가. 허준이 선 왕의 말년을 당하여 궁중에서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雜樂을 올려 마침내는 선왕이 다시 일어나 지 못하는 슬픔을 당하게 하였으니, 그의 죄상을 캐어보면 弑逆하였다고 말하여도 가하다. 이미 그의 죄를 밝게 바로잡아 신명과 사람의 분노를 시원하게 할 수 없었는데 지금 도리어 해가 지 나도록 귀양살이한 것이 그의 죄를 징계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을 하니, 아, 상에게도 병이 많은 것은 진실로 염려할 만하지만 선왕의 병을 잊을 수 있겠으며, 상에게 공로가 있는 것은 진실로 기록할 만하지만 선왕에게 죄가 있는 것은 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상의 이번 일은 三司에 달 려 있으니, 삼사는 당연히 合辭하여 성토하도록 청원해서 우리 임금을 잘못이 없는 곳에 이르 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이 뒤에 간원이 홀로 발론하였다가 즉시 정지하였으

니, 오늘날의 이목 구실을 하는 신하는 임금이 하고 싶어하는 대로 따르는 자라고 말할 만하다.】

○1609년(광해 1) 11월 23일 허준의 석방 철회를 사간원에서 요청하다

○1609년(광해군 1) 11월 24일. 義禁府가 아뢰기를 “허준을 석방할 일을 전교하셨습니다. 성상의 사려는 이 일을 단지 심상하게 여긴 데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허준의 죄는 先朝에 관련이 된 바로 末減해서 귀양을 보낸 것이니, 아무리 한때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한가하게 논 할 겨를 이 없는 것입니다. 또 公議가 圍籬安置하도록 막 주청하였는데 갑자기 석방하게 하는것은 아마 도 미안한 듯합니다. 본부의 뜻이 이와 같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허준에게 이 미 죄가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귀양을 보내어 해를 지나게 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버릴 수 없 기 때문에 이제 석방하여 돌아오도록 명한 것으로, 나도 참작하기를 이미 익숙히 하였다. 그러 나 대간이 바야흐로 論執하고 있으니, 우선 천천히 하도록 하라”하였다.

○1609년(광해 1) 11월 24일 허준의 일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1609년(광해 1) 11월 24일 허준의 일에 대해 의금부에서 아뢰다

○1609년(광해 1) 11월 26일 허준의 일에 대해 사간원에서 건의하다

○1609년(광해 1) 11월 27일 허준의 일 및 박천 현감 이인우·영덕 현령 정도 등의 파직을 사간 원에서 요청하다

○1609년(광해 1) 11월 30일 허준의 일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1609년(광해 1) 12월 1일 허준의 석방 명령 철회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1609년(광해 1) 12월 2일 허준의 석방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1609년(광해 1) 12월 3일 허준의 석방에 대해 사간원에서 연계하다

○1610년(光海君 2) 8월 6일. 王이 전갈하되 “陽平君 許浚이 일찍이 先王때 특히 醫書 纂輯의 命을 받은 후 이제까지 몇 년이 지나 가는 사이 노심초사 정려함은 물론 귀양가서까지 그치지 아니하고 努力한 결과로 비로서 편질을 완성하여 올렸으니 생각하건데 先王의 命으로 시작되어 내게 와서 이루어 졌으니 悲感의 마음 이기지 못하겠다. 熟馬 한 필을 주어 그功을 갚고

이 醫 書를 內醫院으로 하여금 별도로 設局하고 速히 印出 發刊하여 널리 中外에 선포하라. 冊 이름 은『東醫寶鑑』으로 널리 中國의 古今 方書까지 모아 精髓된 것을 分類하여 이루어진 것 이다"

○1611년(光海君 3) 11월 21일. 內醫院에서 아뢰기를 "『東醫寶鑑』을 下3道에 나누어 보 내고 편각토록 글을 各 道에 보낸지가 세월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권질의 분량이 심히 많아 공 역에 요하는 財政이 없는 고로 各處에서 탈보 또는 장계를 올린것이 전후하여 한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 道에서 材料를 정비하여 세후부터 곧 분간하겠다하나 생각하건데 이 글은 다른 冊과 달라 소주 분행의 글자가 작아서 간각이 심히 어려울 뿐 아니라 약명 병방이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생명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제 만일 외방에 부치면 비단 늦어져 期約 이 없을 것이며 착오로 잘못됨이 있을까 두려우며 마침내는 한 卷의 책도 쓰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臣등이 이를 걱정하여 다시 생각해 본 즉 本院에 특별히 設局해서 活字로써 引出하여 醫官들로 하여금 監校케 한다면 일이 쉬울 것이며 틀린 곳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物力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달에 쓰는 요포가 쌀콩을 아울러 18섬 면포 20여필이니 불과 1년 일 일것인바 이 내의원에서 단독으로 판비케한다면 또한 쉽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下3道에서 조치 준비된 재료를 드려오고 면포도 각자 수송시켜 이곳을 돕게 한다면면 피차 공사간 편의한 일이와 臣등이 백번 생각하여 이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 감히 품달합니다" 왕이 전 하되 "그대로 하여라"

○1612년(光海君 4) 許浚이 왕명에 의해 纂한 『纂圖方論脈訣集成』을 內醫院에서 開刊하였다.

○1612년(光海君 4) 10월 2일. 王이 鍼을 맞다. 王이 침맞기에 홀하매 병풍을 거두라고 명하다. 許浚이 아뢰기를 "患候의 증세가 針 한 번만으로는 효험을 보지 못할 것이니 내일 모레 다시 請하겠습니다" 王이 이르되 "명일이 어떠한가?" 許浚이 "연일 침을 맞으시라는 것이 미안합니다" 하고 아뢰었다.

○1612년(光海君 4) 10월 7일. 內醫院 內醫중에 陽平君 許浚은 나이 늙고 일이 많아 訓誨하기 어 렵다고 했다.

○1612년(광해 4) 10월 7일 내의원이 의관 선발의 어려움과 의관의 교육에 대해 아뢰다

○1613년(光海君 5) 2월. 下旬에 許浚이 편찬한『新纂僻瘟方』 1卷을 內醫院의 敎를 받들어 刊行

○1613년(光海君 5) 10월 25일. 禮曹에서 아뢰기를 "근래 運氣가 차례를 잃어 疾病, 發疹이 가

을 부터 번져 閭閻人이 많이 죽는바 전부터 희한한 病이라 합니다. 혹 禁忌에 거리끼고 혹 治療에 몽매하여 그 죽음을 좌시할 따름으로 감히 손 쓰지 못하니 백성의 정상이 측은할 지경입니다. 청컨데 內局 名醫들로 하여금 方書를 널리 詳考하고 經驗諸方을 토대로 硏究하여 이를 治療할 수 있는 醫書를 編纂케하여 印出 頒布하소서" 王이 답하되 "許浚등으로 하여금 속히 纂出하여 救濟의 방도를 강구하고 天地神明께 기양토록 하라"

【가을과 겨울 사이부터 이 돌림병이 생겼는데, 세속에서는 唐紅疫이라 하였다. 또 염병이 간간 이 돌아, 이때부터 끊인 해가 없었다. 수구문 밖에 시체들이 서로 겹칠 정도였는데, 사람들은 살육을 당한 억울한 혼령들이 초래한 것이라 하였다】

○1613년(光海君 5) 11월. 東醫寶鑑이 活字本[16]으로 印刷 完了하여 25卷 25冊이 世上에 빛 을 보다.

○1613년(光海君 5) 12월에 許浚이 편찬한『僻疫神方』 1卷을 內醫院에서 刊行하다.[17]

---

16) 千惠鳳:『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3, p.265-266. 이때 인쇄한『東醫寶鑑』은 乙亥字體의 訓練都監字로서 木活字로 찍어낸 것이다. '訓鍊都監字本'이란 壬辰倭亂 때의 피해가 워낙 커서 亂後 오랫동안 혼란이 지속되고 물자의 결핍으로 世態기 안정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책의 인쇄는 아주 요긴한 것에 한하여 흩어진 옛 활자를 주워 모으고 부족한 것을 木活字로 보충하여 찍어낼 수밖에 없었다. 이때 다행이도 훈련도감에서 자급자족의 한 방안으로 兵士들이 木活字를 만들어 책을 찍어 팔아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려 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訓鍊都監字이며, 이 활자로 찍은 책을 '訓鍊都監字本'이라 일컫는다. 이 활자로 찍은 책의 보급은 宣祖 말기부터 본격화되어 仁祖 후기까지 이루어졌으며, 이들 활자본은 乙亥字體·甲寅字體·庚午字體·甲辰字體·丙子字體의 漢字 활자와 한글 활자로 다양하게 찍혀졌다. '훈련도감자본'은 별로 경험이 없는 병사들이 나무활자를 새겨 찍어낸 것이기 때문에 글자 모양이 바르지 않고 인쇄도 또한 정교하지 못하여 印本이 대체로 조잡한 편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인쇄업무를 맡은 校書館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그 업무를 대신 수행하여 책을 찍어낸 것이므로 印刷文化史的인 면에서의 의의는 자못 크다 하겠다.

17) 許浚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것은 1612년(光海君 4) 가을부터 유행하여 사망자가 많이 생겼던 癘疫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듬해 다시 唐毒疫이 유행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唐毒疫은 醫書에 병명이나 치료법이 없던 酷疾이었다. 그러나 허준은 이 병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병을 唐毒疫이라 한 것은 惡性의 질병에 唐字를 붙였기 때문이었다. 許浚은 이 병의 증상으로 頭痛·身疼·惡寒·高熱 후에 얼굴과 몸에 붉은 색의 發疹이 생기고 정신이 혼미해져 헛소리를 하며, 앓고난 후에는 머리가 모두 빠지고 熱毒으로 피부가 말라 벗겨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猩紅熱의 증상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서, 痘疹이나 痲疹과 혼동하기 쉬운 이 병에 대해 1613년에 이렇게 정확히 病證과 療法을 기술한 것은 이 책이 세계 최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世界病理學史上 許浚의 업적은 매우 탁월한 것이었으며, 당시 조선의 의학, 특히 傳染病學은 세계적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준의 이러한 의학지식과 의술에 대한 卓見은『東醫寶鑑』을 찬술한 후 더욱 완숙해졌던 것이다.『辟易神方』은 이와같이 매우 탁월한 과학적 醫書로서 『東醫寶鑑』과 함께 그의 큰 업적의 하나였으며, 조선 의학의 學問的·技術

○1615년(光海君 7) 8월 17일(陽歷 9월 9일) 輔國崇祿大夫陽平君-大醫許浚 逝去(朝鮮醫學史)[18]

○浚은 70歲의 일기로 先祖의 故鄕인 陽川의 孔岩(江西區 加陽洞 24번지. 塔山아래)에서 一生의 大作인 『東醫寶鑑』을 어루만지면서 學究와 苦難으로 일관된 生을 마쳤다.[19]

○1615년(光海君 7) 11월 10일. 吏曺에서 아뢰기를 "王의 하지가 있었던 許浚이 扈聖功臣인 內醫 院 醫員이므로 內官 李奉貞의 例에 의하여 輔國(正1品으로 議政의 班列임)을 追贈하는 일입니 다. 奉貞이 輔國으로 追贈된 일이 없으며, 內官으로서는 輔國으로 追贈된 일이 없었은 즉 許浚 이 醫官으로서는 府院君이 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王이 전하되 "內官 方俊豪의 輔國 追贈 여부를 알아보고 다시 功臣會盟錄을 詳考하여 품계토록 하라"[20]

○1615년(光海君 7) 11월 13일. 吏曹에서 아뢰기를 "內官 方俊豪의 輔國 追贈 여부에 대하여 다시 詳考한 즉 翼社功臣임으로써 輔國을 추증하였으며 府院君으로는 비준을 얻지 못하고 西河君으 로 下批되었습니다" 王이 전교하되 "許浚을 方俊豪의 例에 依하여 輔國을 追贈케하다.[21]

○許浚이 돌아 갈 當時의 傳統時代에는 葬禮日이 身分에 따라 달랐다. 天子는 7개월, 諸侯는 5개 월, 大夫는 3개월만에 葬事지냈고, 벼슬하지 않은 선비는 한달을 넘겨 장사했으니[22] 許浚은 崇 祿大夫이며 8월달 逝去하였으니 11월에 葬事지내면서 조정에서는 論功을 벌였을 것이다.

○筆者의 見解로는 許浚의 상여(喪輿)는 孔岩에서 출발하여 당시 風習에 따라 손쉬운 水路를 이 용하여 漢江을 따라 내려가다가 임진강을 거슬러 올라가 獨子인 謙이가 坡州牧使이므로 유명한 幽宅地가 많은 長湍땅 下浦里 廣岩洞에 葬事하였을 것으로 본다.

○1618년(광해 10) 8월 18일 기준격과 허준을 정국하다. 기준격과 허균의 공초

○1618년(광해 10) 9월 28일 대사헌 유경종이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

的 수준을 세계에 과시한 것이었다(孫弘烈:「朝鮮中期 醫術과 醫藥의 發達」『國史館論叢』第56輯, 1994, pp.230-231).

18) 三木 榮; 朝鮮醫事年表, 日本 京都, (株)思文閣出版, 1985, P.337

19)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 洞名沿革攷 15 江西.陽川區篇, 서울, 서울특별시, 1991, P. 134

20)韓相潤譯: 光海君日記 1615.11.10.

21)韓相潤譯: 光海君日記 1615.11.13.

22) 한국고문서학회; 朝鮮時代 生活史, 서울, 역사비평사, 1996, P.53

○1618년(광해 10) 9월 28일 대사간 윤인이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

○1618년(광해 10) 9월 28일 장령 한명욱과 헌납 홍요검이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

○1618년(광해 10) 9월 28일 집의 임건·사간 정도 등도 허준의 녹봉 문제로 체직을 청하다

(5).東醫寶鑑

전교하기를,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은 일찍이 선조(先朝) 때 의방(醫方)을 찬집(撰集)하라는 명을 특별히 받들고 몇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심지어는 유배되어 옮겨 다니고 유리(流離)하는 가운데서도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여 이제 비로소 책으로 엮어 올렸다. 이어 생각건대, 선왕께서 찬집하라고 명하신 책이 과인이 계승한 뒤에 완성을 보게 되었으니, 내가 비감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허준에게 숙마(熟馬) 1 필을 직접 주어 그 공에 보답하고, 이 방서(方書)를 내의원으로 하여금 국(局)을 설치해 속히 인출(印出)케 한 다음 중외에 널리 배포토록 하라."

하였다.【책 이름은 『동의보감(東醫寶鑑)』인데, 대개 중조(中朝)의 고금 방서를 널리 모아서 한 권에 모은 다음 분류하여 책으로 만든 것이다.】

내의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보내서 간행하게 할 일을 앞서 이미 계하하여 각도에 공문을 발송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책 수가 매우 많고 공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각처에서 탈보(?報) 및 장계가 올라온 것이 전후로 한둘이 아니었지만, 각도에 재료를 준비해서 해가 바뀌면 즉시 나누어 간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서 두 줄로 소주(小註)를 써놓아서 글자가 작아 새기기가 매우 어려우며, 약명(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관계가 되는데 애초에 본책(本冊)이 없어서 필사본으로 한 부를 간행했을 뿐이므로 다시 의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외방(外方)에 맡겨 두면 시일이 지연되어 일을 마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와 오류가 생겨서 결국 쓸모없는 책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본원에 별도로 국(局)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의서(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의관(醫官)이 감수(監修)하고 교열(校閱)한다면 반드시 일의 성취가 빠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해사(該司)의 물력(物力)이 곤란하기는 하나, 한 달에 들어가는 요미(料米)와 가포(價布)를 계산해 보면 미(米)·태(太)가 아울러 18석이고 무명이 20여 필인데 그 공정이 1년의 공사에 불과하므로 통계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사로 하여금 혼자 마련하게 한다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삼도가 앞서 재료를 마련해 놓았으니, 들어갈 무명을 헤

아려서 각각 수송하여 경국(京局)을 돕게 한다면 공사간에 다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신들이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계획이 제일 낫습니다.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許浚은 東醫寶鑑을 完成하여 光海君에게 바쳤다. 光海君은 感歎해 마지않았으며 그의 勞苦를 慰勞하며 褒賞을 代身해서 그의 一生 一代의 宿怨인 庶族의 不名譽를 씻어주었다. 곧 特別敎旨로 「以後로 陽川許氏에 한해서는 永久히 嫡庶의 差別을 國法으로 禁한다.」는 것이었다.[23]

임금이 대신(大臣) 및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접때 칙사(勅使)가 차비 역관(差備譯官)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 만약 폐단이 있다면 내가 바야흐로 예부(禮部)에 있으니 마땅히 주선하여 변통(變通)하겠다.' 고 했기 때문에, 신이 대신과 의논하고, 세폐목(歲幣木)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정할 것과 사행(使行) 때 머무는 곳에 사람의 출입을 막지 말 것 및 문서(文書)는 날을 정하여 판하(判下) 할 것 등의 일을 시험삼아 탐문(探問)하게 하였더니, 칙사가 이자(移咨)하면 마땅히 주선할 것을 허락하고, 이어 종이 묶음과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3, 4종의 물건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나머지 일은 반드시 이자할 것이 없으나, 세폐(歲幣)를 만약 싼 값으로 은(銀)으로 환산한다면 진실로 다행이겠습니다. 다만 환산하여 정할 때에 값의 높고 낮음을 다툼 또한 심히 괴로우니, 이자하는 일의 당부(當否)를,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칙사가 수역을 불러 귀로의 연향과 아침 다담(?啖)을 제감하고, 단지 저녁 다담만 대접하도록 청하게 하였으므로, 준례대로 중사(中使)를 보내어 신사(申謝)하고, 따로 송도(松都)와 양서(兩西) 세 곳의 문안사(問安使)만 정했다. 칙사가 또한 황지로 엄금하였다 하여 단지 원래의 예단(禮單)만 받고 따로 주는 것은 받지 않았으며, 『동의보감(東醫寶鑑)』 및 청심환(淸心丸) 50환과 다리[?髮] 두 묶음만 구하여 갔다. 이때에 부사가 손수 윤택동번(潤澤東藩)이라고 크게 4글자를 써서 남관(南館)의 벽에 새겨서 걸기를 청하였는데, 관반(館伴) 조상경(趙尙絅)이 역관을 시켜 잘 말하여 거절하게 하고 받지 않았다.

내국(內局)에서 입시(入侍)하였는데, 명하여 대신과 비국 당상(備局堂上)도 같이 들어오고 왕세자(王世子)도 시좌(侍坐)하게 하였다. 영의정 김재로(金在魯)가 『동의보감(東醫寶鑑)』과 『증보만병회춘(增補萬病回春)』을 영영(嶺營)으로 하여금 간판(刊板)하게 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였다.

(6)仁祖實錄

23)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 洞名沿革攷 (15) 江西. 陽川區篇, 서울, 서울特別市, 1991, P.133

○1624년(인조 2) 4월 16일 호종한 공이 있는 내관 최언순에게 말 한 필을 주다

이비(吏批)가 아뢰기를,

“내관 최언순(崔彦恂)은 시종 호종하였기 때문에 가자(加資)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최언순에 게 지금 한 자급을 올려주면 보국(輔國)이 될 것인데, 보국의 자급은 동반(東班)·서반(西班)의 정직(正職)을 거치지 않은 자에게는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이 때문에 전에 선조(先祖)에서 의관 (醫官) 허준(許浚)을 보국으로 삼자 대론(臺論)이 거듭 일어나 마침내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선 조에서 이미 이루어진 규례인 것으로서 지금 감히 규례를 어기고 가벼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러면 숙마 한 필을 내리라.”

하였다.

(7) 顯宗實錄

○1662년(현종 3) 9월 26일 의관 유후성을 보국 숭록 대부에 올리는 것을 병조에서 반대하다

병비(兵批)가 아뢰기를,

“시약청(侍藥廳)에서 약을 의논한 의관들에게 가자(加資)하는 일을 병조로 하여금 거행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후성(柳後聖)은 현재 숭록 대부(崇祿大夫)의 자계(資階)에 있는 만큼 지금 만약 가자한다면 보국(輔國)으로 올려야 할 것인데, 의관의 경우 보국에 오른 전례(前例)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대답하기를,

“법전에 그 품계를 허락하지 말라는 조례가 있지 않다면, 그보다 뛰어난 공을 세운 의관은 없으니, 법전대로 시행토록 하라.”

하였다. 병비가 또 아뢰기를,

“『대전(大典)』을 가져다 상고해 보건대, 정1품의 자급을 받는 대상에 한계를 둔다고 내건 조문은 없었습니다. 다만 보국 숭록 대부는 곧 정1품으로서 삼공(三公)과 같은 등급인 만큼 체례상 매우 중대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의 반열에 있어서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게 될 뿐 아니라 약방에서 약을 의논할 때의 좌차(坐次)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게 됩니다. 과거 선조조(宣祖朝)에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을 책훈(策勳)하고 군(君)으로 봉해 주면서도 자급은 숭록 대부에 그치게 하였는데, 조종조에서 그렇게 행했던 뜻이 우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후성의 출처(出處)나 문지(門地)가 허준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의관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국으로 임명하는 일을 창설한다는 것이 실로 타당치 못할 듯하기에 이렇게 감히 신품(申稟)합니다.”

하였는데, 비답을 오래도록 내리지 않았다.

○1662년(현종 3) 10월 7일 병조가 유후성을 가자 취품한 일이 정도에 지나치다고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유후성(柳後聖)의 가자(加資)를 취품(取稟)한 일에 대해 분부하시기를 '만일 법전에 허용하 지 않는다는 문안만 없다면, 의관(醫官) 중에 공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나은 자가 없으니,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라.' 고 하셨습니다. 『대전(大典)』을 놓고 상고해 보건대 의관에게 자 급을 한정하여 막는 문안이 별도로 나타나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보국 숭록 대부는 정1품이므로 삼공과 등급이 같습니다. 옛적 선묘조(宣廟朝) 때 양평군(陽平君) 허준(許浚)을 책훈(策勳)하여 봉군(封君)하면서도 자급은 숭록 대부에 그치게 하였습니다. 조종조에서 이미 행한 일들은 우연 한 뜻이 아니니, 보국 숭록 대부를 주는 예를 만드는 것은 실로 미안합니다. 황공하여 감히 아룁 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이미 한정하는 문안이 없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고, 후성에게 보국 숭록 대부를 가자하였다.

상이 동궁에 있을 때부터 줄곧 질병이 있었는데, 후성이 보호한 공로가 많았다. 그래서 즉위한 이래로 은총이 매우 높더니, 이에 이르러 이런 명이 있었다. 그러나 의관인 잡류(雜流)가 보국 숭록 대부에 오른 것은 국조 이래로 있지 않았던 일이라서 물정이 모두 놀라워하였다.

(8). 正祖實錄

○1799년(정조 23) 12월 11일 『제중신편(濟衆新編)』이 완성되었다.

상이 세자로 있을 때 10년 동안 약시중을 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연구했던 것은 진맥(診脈)에 대한 비결과 탕약(湯藥)에 대한 이론들이었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널리 의술(醫術)의 이치를 탐구하여 위로는 『소문(素問)』과 『난경(難經)』으로부터 아래로 역대의 모든 처방에 이르기까지 모두 골고루 열람하였다.

본조(本朝)의 의학 서적으로는 오직 허준(許浚)의 『동의보감(東醫寶鑑)』이 가장 상세하다고 일컬어져 왔으나 글이 번거롭고 내용이 중복되는가 하면 소홀히 다루거나 빠뜨린 부분이 또한 많았다. 이에 상이 여기에 교정을 가하고 범례(凡例)를 붙여 『수민묘전(壽民妙詮)』 9권(卷)을 만들어 낸 다음 다시 내의원에 명하여 여러 처방들을 채집해서 번잡스러운 것은 삭제하고 요점만 취한 뒤 경험방(經驗方)을 그 사이에 첨부해서 세상에 유행시킬 수 있는 책 1부(部)를 따로 편집하게 하였다. 그러나 몇 차례에 걸쳐 원고 수정 작업을 계속해 오다가 상이 즉위한 지 24년이 되는 때에 이르러서야 책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원편(原編)이 8권이고 목록(目錄)이 1권으로서 풍(風)·한(寒)·서(暑)·습

(濕)으로부터 약성가(藥性歌)에 이르기까지 모두 70목(目)으로 되어 있었는데, 1목(目)마다 먼저 진맥에 대한 비결과 증세를 서술한 다음 합당한 처방과 약제를 붙여놓음으로써 멀리 외딴 시골에 사는 백성들까지도 한 번 책을 보기만 하면 환히 알게끔 하였다. 그리고는 그 책의 이름을 『제중신편』이라 하고 주자소(鑄字所)에 넘겨 간행해서 반포토록 하는 한편 내의원 도제조인 이병모(李秉模)에게 서문(序文)을 지으라고 명하였다.

(9) 劉 以(爾) 泰

『소설 동의보감』에서 許浚의 스승이라 하는 柳義泰와 이름이 비슷한 醫員으로서 유명한 사람은 유이태(劉以泰 혹은 劉爾泰)라 할 수 있다. 그는 머리에 나는 부스럼인 頭瘡과 紅疫 등의 疾病이 널리 퍼지는데 충격을 받고 이것의 치료에 노력하였다고 전하는 朝鮮 正祖 때의 醫員이었다. 그가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며 또 유명한 의원이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肅宗 39년(1713) 嶺南 출신의 의원 柳以泰를 內醫院에서 재촉하여 불러 올리려 하였으나, 전주까지 왔다가 병을 핑계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물론 그가 돌아가도록 내버려둔 道伯까지 처벌하도록 司憲府에서 탄핵한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의술은 인정 받았던 의원으로 생각된다.[24] 또 그는 자신의 집에 代代로 내려오던『痲疹經驗方』을 근거로 해서 正祖 10년(1786)에 筆寫本『痲疹篇』을 내놓았는데, 이 책은 1931년 慶南 晉州에서 朴周憲이 出刊한 바 있다.

특히 劉以泰는 韓國 口碑文學에서 볼 때 許浚과 함께 재미 있는 說話를 지닌 人物이다. 그에 관한 說話는 주로 嶺南地方에서 傳承되어 왔는데, 그 내용은 '劉爾泰湯'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 하루는 劉爾泰가 어느 곳을 지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담장 밑에서 藥을 달이는데 약봉지에 '劉爾泰湯' 이라고 적혀 있었다. 劉爾泰가 물으니, 대답하기를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名醫인 劉爾泰가 있어야 하는데 그를 만날 길이 없어 그 대신 약봉지에 유이태라고 쓰게 되었다고 했다는 것이다[25]

이로 미루어 보아 유이태는 嶺·湖南 일대에서 당대에 꽤 명성이 있던 의원이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만, 그가 許浚의 스승이었다는 소설 내용은 그와 許浚의 生存年代로 볼 때[26] 소설가의 생각일뿐 歷史的 事實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

24) 『肅宗實錄』卷54 39年 12月 己丑條.
25) 李在樹; 韓國韓醫學史, 대구, 도서출판 우리, 1996, P.137.
26) 許浚은 1539년(中宗 34)에서 1615년(光海君 7)까지 生存했던 人物이고, 柳以泰의 生沒年代는 알 수 없으나, 肅宗 代(1675-1720)에 活動했던 人物이었던 것으로 보아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 分明하다.

(10) 追慕 事業

許浚에 대한 追慕事業은 처음에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同門會(회장 文鍾瑾, 학술이사 韓大熙)가 中心이 되어 墓所의 發見, 龜岩公園의 造成에 대한 建議, 銅像建立 發意 등, 많은 實積이 있자 주위에서 이 事業을 呼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92년 5월 23일 세종호텔에서 醫聖 許浚紀念事業會가 發足하여 事業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러한 追慕事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년전에 百濟史學家 韓宗燮은 漢江邊이 문화유적지 임을 想起시켜 서울시에 塔山주위 한강변 一帶 20,000평을 開發制限地區로 指定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1991년 5월 25일. 慶熙同門會는 許浚의 遺跡地를 찾아 現場을 踏査하던 中 新興大學 地籍科 金 秋潤교수가 강서구 가양동의 塔山一帶가 許浚의 유적지라는 心證을 굳히고 돌아오자 學術理事 韓大熙院長은 이를 立證하는 文獻을 발견함으로서 不動의 物證을 잡았다. 그리고 허가바위 洞 窟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아파트 건축공사로 인해 埋沒,毁損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中斷 시킨 후 서울特別市에 이를 檢討하도록 建議하였다.

○1991년 6월 3일 처음으로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同門會는 大統領에게 서울 江西區 加陽洞 一 帶가 許浚 先生의 文化遺跡地이므로 「許浚公園으로 設定되도록 歎願하는 글」을 內容證明으로 提出하다.

○1991년 6월 10일 同門會가 確認한바에 의하면, 許浚의 影幀은 韓醫師이며 人物畵家인 石影 崔 光守(1932 - 1990) 韓醫學博士에 의해 그려 國家의 審査 끝에, 文化部에 「標準影幀 제40호」로 登錄시키고, 崔는 自費로 이를 널리 配布하였다.

許浚의 標準影幀은 文化觀光部 博物館課(電話 02-3704-9430)와 國立現代美術館 學藝硏究室(02-503-9672)에 의하면 1989년에 당시 文化部에 登錄되었고,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전화 02-503-7744)에 影幀의 『上半身이 標準影幀』으로 保存되었고, 이 영정은 1991년 9월에 發刊된 龜巖學報 創刊號에 揭載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다른 사진 또는 그림은 本會에서 認定할 수 없다고 본다.

○1991년 7월 3일 文化部로 부터 本會에 1991년 9월달을 “許浚에 대한 文化의 달”로 設定했다는 통보를 받음.

○1991년 7월 30일 本會는 서울特別市로부터 江西區 加陽洞에 「龜巖公園」을 造成하기로 決定했 다는 通報를 받음.

○1991년 9월 同門會는 文化人物 許浚에 대한 포스타 製作을 위해 廣東製藥(株) 崔秀夫會長에게 協助를 付託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

○1991년 9월 同門會는 龜巖學報 제작을 위해 許仁茂博士와 李好鎔院長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1991년 9월 5일 同門會는 龜巖學報 創刊號(113쪽)를 發行하였다.

○1991년 9월 7일 同門會의 學術理事 韓大熙는 KBS뉴스광장 프로에 出演하여 9월달 文化의 人 物 許浚에 대한 醫學思想과 東醫寶鑑의 意義에 대하여 對談을 가졌다.

○1991년 9월 14일 제1회 許浚醫學賞에 功勞部門에 故 權義壽, 故 禹吉龍, 故 尹武相, 故 李羽龍, 故 鄭源熹, 學術部門에 故 朴鎬豊, 奉仕部門에 禹在先에 施賞하고 姜薰德, 金秋潤, 李亮載, 韓宗 燮에게 功勞牌를 施賞하였다.

○1991년 9월 30일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同門會 學術調査團(團長 文鍾瑾, 부단장 韓大熙)은 國 防部와 鄭在煥씨 等의 協助로 京畿道 坡州郡 津東面 下浦里 山 129번지 D.M.Z 內에서 許浚 先生의 失傳 墓所를 發見하였다.

○鄭在煥(전화 02-813-1827)씨에 의하면 옛날 1950년 韓國戰爭 前에 자기의 집 근처에 朝鮮時代 때에 국가로부터 下賜 받은 許氏宗中 산에 許氏의 床石이 있는 묘소가 있어 同門會 發掘팀에 알림으로서 發見되었다. 자세한 內容은 1992년에 發行된 龜巖學報 제2호에 게재된 韓大熙의 『醫聖 許浚의 失傳 墓所 發見 顚末』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1991년 9월 30일 文化部는「東醫寶鑑」(寶物 제1085호)[27],「辟疫新方」(寶物 제1086호)[28], 「新纂辟瘟方」(寶物 제1087호)[29], 「諺解胎産集要」(寶物 제1088호)[30]를 寶物로 指定하다.

---

27).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서울, 세창출판사, 1999, P.398.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28).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전게서, P.398.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서울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음.
29).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전게서, P.398.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
30).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전게서, P.398.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60-1 국립중앙도서관과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 한독의

○1991년 12월 16일 文化部는「纂圖方論脈訣集成」(寶物 제 1111호)[31]을 寶物로 指定하다.

○1991년12월 24일 서울특별시는 강서구 가양동 「허가바위」"[32]를 서울시 記念物 제11호로 指定 하다.

○1992년 1월 28일 同門會는 서울특별시에 강서구 가양동 孔岩일대가 許浚선생의 유적지이므로 史蹟地로 指定을 요청하다.

○1992년 2월 26일 同門會는 京畿道에 許浚墓碑를 寶物로, 墓地를 史蹟地로 지정 요청하다.

○1992년 5월 23일 同門會가 母體가 되어 醫聖許浚紀念事業會 創立總會를 세종호텔에서 개최하고 名譽會長에 裵元植, 權翊鉉. 會長에 文鍾琲, 事務處長에 韓大熙理事 등을 선임하다.

○1992년 6월 5일 경기도는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 산129번지 「許浚先生 墓」[33] 1基를 「京畿道 記念物 제128호」로 指定하고 所有者를 「許浚紀念事業會」로 하는 指定書를 紀念事業會에 보 내 오다.

○紀念事業會는 銅像建立分科委員會(委員長 文鍾琲)를 구성하고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접촉하여 龜岩公園내에 銅像設置 위치를 選定하고 동상제작에 몰두하였다.

○1992년 8월 13일 紀念事業會는 文化部에 社團法人 設立許可 書類를 제출하다.

○1992년 9월 28일 제2회 許浚醫學賞에 功勞部門에 故 朴性洙, 學術部門에 故 尹吉榮, 奉仕部門에 楊福圭에게 施賞하고 故 李恩成, 金種五, 孔泰奎에게 功勞牌를 施賞하였다.

○1992년 10월 20일 紀念事業會는 文化部로부터 「社團法人 設立 許可書」(허가번호 제132호)를 받았다.

○1992년 10월 2일 紀念事業會는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북등기소에 제65호로 法人設立 登記를 하 다.

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31).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전게서, P.399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 한독의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음..

32).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전게서, P.24.

33).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전게서, P.141.

○1992년 11월 15일 紀念事業會는 11월 둘째주 일요일을 매년 許浚先生 墓祭日로 定하고, 92년에 는 제2회 許浚선생 墓祭를 하포리 묘소에서 奉行하다.

○1992년 11월 28일 紀念事業會 內에 定款에 의거하여 傘下에 學術分科委員會를 구성함에 따라 이를 擴大, 發展시키고자 「龜巖學會」 創立總會를 한국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개최하고, 회장 에 韓大熙를 選出하다.

○1993년 1월 5일 龜巖學會(會長 韓大熙)는 龜巖學報 제2호를 發刊(160쪽)하다.

○1993년 제3회 許浚醫學賞에 功勞部門 故 金定濟, 奉仕部門에 林逸圭에게 施賞하다.

○1993년 12월 30일 龜巖學會는 龜巖學報 제3호를 發刊(133쪽)하다.

○1994년 4월 16일 紀念事業會와 강서구는 共同으로 龜巖公園 및 許浚先生 銅像 建立 開場式을 현장에서 開催하였다.

○1995년 11월 12일 許浚墓所에서 墓所聖域化事業 竣工紀念 墓祭를 갖다

○1996년 2월 5일 龜巖學會는 龜巖學報 제4호를 發刊(249쪽)하다.

○1997년 12월 20일 龜巖學會는 龜巖學報 제5호를 發刊(165쪽)하다.

○1999년 9월 강서구 한의사회(회장 金龍基)와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9월 첫째 週를 「구암축제 기간」으로 설정하고, 금년에는 9월 1일부터 5일까지를 축제기간으로 정하고 「제1회 구암축제」를 개최하였다.

Ⅲ. 結 言

以上으로 許浚과 關聯되는 몇 種類의 資料를 살펴 보았다. 위에서 言及한 史料들 중 <太平會盟圖>를 제외하고는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史料別로 許浚과 관계되는 것만 모아 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史料別로 정리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許浚의 生年은 1546년(明宗 1) 또는 1547년(明宗 2) 등으로 意見이 엇갈려 정확한 生年이 밝혀지지 않았었다. 그런데 1998년 晉州博物館에서 개최한 『壬辰倭亂 特別展』에 의해 알려진

『太平會盟圖 屛風』을 통해 그의 生年이 1539년(中宗 34)이라는 것이 確實하게 밝혀졌다는 것은 하나의 큰 所得이라 하겠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柳義泰」라는 小說 속의 가공 人物이 「許浚의 스승」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이러한 誤謬는 許浚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와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또 歷史的 事實로 작성되는 傳記와 歷史小說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小說 東醫寶鑑」은 단순히 小說로만 봐야 하지 않을가? 「소설 동의보감」은 훌륭히 創作된 小說일뿐 傳記는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眉岩日記를 통하여 許浚이 미암일기에 처음 보이는 1568년(선조 즉위년) 1월부터 許浚이 歷史記錄에 처음 보이는 宣祖를 診療한 1575년(선조 8) 2월까지 만 7년간의 記錄이 밝혀지므로 「소설 동의보감」에 나타나는 경상도 山陰縣에서의 생활은 創作小說속의 즐거운 애깃거리로 돌아갔다는 點이다.

許浚이 韓國醫學의 발달에 큰 자취를 남긴 人物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誇張하거나 美化해서는 오히려 許浚을 올바르게 理解하는데 妨害가 될 것이다. 따라서 許浚에 대한 연구는 그의 性格이나 人品에 대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 그가 이룩해 놓은 學問的·技術的 業績이 그가 살았던 시대와 그 후 韓國의 歷史, 특히 韓國醫學史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고찰하는 데에 더욱 置重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許浚이 살았던 시대의 歷史的 狀況과 그의 여러 著述과의 관계, 즉 이러한 著述이 출현하게 된 動機와 그의 여러 著述이 疾病 治療·醫學 敎育 등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그의 學問的 成果를 밝혀내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 학문적으로 같은 疾病에 대한 그의 治療法과 현대의 治療法(韓·洋方)을 比較 연구한다면 당시 朝鮮의 醫學 水準을 究明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당시의 朝鮮醫學이 世界醫學史에서 차지하고 있는 位置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傳染病에 대한 許浚의 해박한 知識과 그 治療法은 그의 커다란 業績중의 하나였기에 이에 대한 보다 깊은 硏究가 要請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東醫寶鑑』뿐 아니라 그가 저술한 여러 醫書에 대해서도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그것은 그의 다른 저서에 대한 깊은 연구야 말로 그의 學問을 더욱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本稿에서 記述한 몇몇 資料가 許浚을 연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許浚과 그의 학문을 理解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編纂한 여러 著書와 기타 醫員들의 저술은 물론 聯關이 있는 여러 자료와 史書를 폭 넓게 涉獵하여 새 世紀에는 許浚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위의 資料를 整理해 보았다.

끝으로 眉巖日記를 接할 수 있도록 해 주신 潭陽鄕土文化硏究會 李海燮회장님과 朝鮮實錄을 볼 수 있도록 해 준 淸州大學校 孫弘烈교수님, 貴한 資料를 보내 준 晉州博物館 韓 洙 선생님께 感謝를 드린다.

<參考 文獻>

書 籍

김용삼: 조선 오백년 역사 대탐험, 서울, 동방미디어, 1996.

眉巖日記 제 1 집, 潭陽鄕土文化硏究會, 李海燮, 1992.

眉巖日記 제 2 집, 潭陽鄕土文化硏究會, 李海燮, 1993.

眉巖日記 제 3 집, 潭陽鄕土文化硏究會, 李海燮, 1994.

眉巖日記 제 4 집, 潭陽鄕土文化硏究會, 李海燮, 1996.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판 宣祖實錄.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판 光海君日記,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 洞名沿革攷 (15) 江西, 陽川區篇, 서울, 서울特別市, 1991.

陽川 許氏 族譜 (埜堂公派 派譜)

원영섭; 우리동네 보물찾기, 서울, 세창출판사, 1999.

李恩成; 소설 동의보감 上.中.下, 창작과 비평사, 1990.

李在樹; 韓國韓醫學史, 대구, 도서출판 우리, 1996.

임진왜란; 국립 진주박물관, 통천문화사, 1998.

증보판 朝鮮王朝實錄, CD-ROM Ⅱ; 서울시스템 주식회사, 1995.

증보판 朝鮮王朝實錄, CD-ROM Ⅲ; 서울시스템 주식회사, 1995.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民音社, 1993.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韓相潤 譯; 光海君 日記, 1992.

論 文

구완희: 朝鮮 中葉 士族孽子女의 贖良과 婚姻 - 「眉巖日記를 통한 사례검토」, 慶北史學 8, 1985.

金 澔: 16世紀 後半 17世紀初 醫官 許浚의 生涯 再考, 韓國文化 21, 1998.

李成妊: 16세기 朝鮮 兩班官僚의 仕宦과 그에 따른 收入 -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 歷史學報 145, 1995.

李成妊: 朝鮮中期 어느 兩班家門의 農地經營과 奴婢使喚 - 柳希春의 眉巖日記를 중심으로 -, 震檀學報 80, 1995.

李鍾馨: 許浚先生과 東醫寶鑑, 龜巖學報, 1卷, 1991.

정재훈: 眉巖 柳希春의 生涯와 學問, 남명학연구 3, 1993.

韓大熙: 許浚의 生涯에 對한 考察, 龜巖學報, 1卷, 1991.